

제439회 국회
(정기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 시 2026년9월16일(수)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60)
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90)
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91)
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14)
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25)
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49)
7.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85)
8.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04)
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10)
1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21)
11.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61)
1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90)
1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37)
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51)
1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19)
1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20)
1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23)
1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34)
1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65)
2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90)

2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74)
2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75)
2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81)
2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94)
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30)
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44)
2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56)
28.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71)
2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72)
30.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956)
3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93)
32.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01)
3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05)
34.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05)
3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29)
3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66)
3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83)
3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86)
3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07)
4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12)
41.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13)
4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25)
43.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30)
44.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특별법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49)
45.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54)
4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73)
4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80)
48.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18)
4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37)
5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8567)

5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593)
5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597)
5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599)
5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00)
5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02)
5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09)
5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11)
5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12)
5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35)
6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91)
61.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연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92)
6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93)
6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95)
6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52)
6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77)
6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82)
6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84)
68.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86)
6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95)
7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877)
7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20)
7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23)
7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43)
7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53)
7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70)
7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80)
7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81)
7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85)
7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98)
8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20)
8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42)
8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43)

8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57)
8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74)
85.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91)
8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11)
8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43)
8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49)
89.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27)
9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85)
9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96)
9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02)
9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16)
9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22)
9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42)
9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49)
9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98)
9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69)
9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87)
10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91)
10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28)
102.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39)
10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42)
10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64)
105.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15)
10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50)
10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81)
10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91)
10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96)
11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97)
11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53)

11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54)
1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18)
11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30)
115.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61)
11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66)
11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74)
11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94)
11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35)
12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41)
12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71)
1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19)
12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23)
1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24)
12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90)
12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00)
12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07)
12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25)
1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70)
13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80)
13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82)
13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50)
13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52)
13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76)
135.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94)
136. 대통령령(안) 법률위반 여부 등 검토·처리에 관한 청원(황희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90)
137.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에 관한 청원(김학희 외 50,37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300)
138.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대통령령(안) 법률위반 여부 등 검토·처리에 관한 청원(황희 의원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90)
139. 현안보고

140. 202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41. 2026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
142.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4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

상정된 안건

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60) 11
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90) 11
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91) 11
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14) 11
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25) 11
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49) 11
7.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85) 11
8.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04) 11
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10) 11
1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21) 11
11.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61) 11
1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90) 11
1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37) 12
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51) 12
1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19) 12
1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20) 12
1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23) 12
1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34) 12
1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65) 12
2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90) 12
2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74) 12

2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75)	12
2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81)	12
2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94)	12
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30)	12
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44)	12
2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56)	12
28.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71)	12
2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72)	12
30.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956)	12
3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93) ...	12
32.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01)	12
3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05)	12
34.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05)	12
3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29)	12
3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66)	12
3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83)	12
3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86)	12
3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07)	12
4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12)	12
41.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13)	12
4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25)	13
43.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30)	13
44.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특별법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49)	13
45.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54) ...	13
4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73)	13
4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80) ...	13
48.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18)	13
4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37)	13
5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8567)	13
5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593)	13
5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597)	13
5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599)	13
5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00)	13
5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02)	13
5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09)	13
5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11)	13
5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12)	13
5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35)	13
6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91)	13
61.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연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92)	13
6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93)	13
6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95)	13
6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52)	13
6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77)	13
6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82)	13
6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84)	13
68.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86)	13
6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95)	13
7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877)	13
7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8920)	13
7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23)	13
7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43)	13
7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53)	13
7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70)	13
7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80)	14
7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81)	14
7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85)	14

7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98)	14
8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20)	14
8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42)	14
8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43)	14
8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57)	14
8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74)	14
85.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91)	14
8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11)	14
8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43)	14
8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49)	14
89.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27)	14
9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85)	14
9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96)	14
9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02)	14
9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16)	14
9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22)	14
9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42)	14
9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49)	14
9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98)	14
9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69)	14
9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87)	14
10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91)	14

10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9628)	14
102.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39)	14
10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42)	14
10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64)	14
105.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9715)	15
10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50)	15
10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81)	15
10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91)	15
10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96)	15
11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97)	15
11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53)	15
11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54)	15
1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18)	15
11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30)	15
115.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61)	15
11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20066)	15
11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20074)	15
11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94)	15
11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35)	15
12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20141)	15
12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71)	15
1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19)	15
12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20223)	15
1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24)	15
12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90)	15
12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00)	15
12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07)	15
12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25)	15

1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70)	15
13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80)	15
13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82)	15
13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50)	15
13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52)	15
13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76)	15
135.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94) ...	15
136. 대통령령(안) 법률위반 여부 등 검토·처리에 관한 청원(황희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90)	16
137.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에 관한 청원(김학희 외 50,37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300)	16
138.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7
- 대통령령(안) 법률위반 여부 등 검토·처리에 관한 청원(황희 의원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90)	
139. 현안보고	17
14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	40

(14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희정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국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60)
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90)
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91)
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14)
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25)
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49)
7.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85)
8.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04)
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10)
1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21)
11.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61)
1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90)

1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37)
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51)
1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19)
1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20)
1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23)
1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34)
1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65)
2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90)
2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74)
2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75)
2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81)
2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94)
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30)
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44)
2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56)
28.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71)
2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72)
30.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956)
3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93)
32.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01)
3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05)
34.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05)
3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29)
3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66)
3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83)
3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86)
3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07)
4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12)
41.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13)

4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25)
43.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30)
44.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특별법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49)
45.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54)
4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73)
4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80)
48.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18)
4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37)
5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567)
5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593)
5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597)
5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599)
5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00)
5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02)
5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09)
5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11)
5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12)
5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35)
6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91)
61.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연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92)
6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93)
6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95)
6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52)
6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77)
6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82)
6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84)
68.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86)
6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95)
7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877)
7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20)
7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23)
7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43)
7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53)
7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70)

7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80)
7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81)
7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85)
7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98)
8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20)
8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42)
8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43)
8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57)
8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74)
85.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91)
8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11)
8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43)
8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49)
89.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27)
9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85)
9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96)
9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02)
9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16)
9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22)
9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42)
9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49)
9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98)
9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69)
9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87)
10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91)
10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28)
102.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39)
10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42)
10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64)

105.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15)
10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50)
10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81)
10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91)
10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96)
11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97)
11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53)
11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54)
1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18)
11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30)
115.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61)
11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66)
11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74)
11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94)
11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35)
12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41)
12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71)
1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19)
12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23)
1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24)
12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90)
12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00)
12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07)
12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25)
1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70)
13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80)
13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82)
13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50)
13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52)
13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76)
135.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94)

136. 대통령령(안) 법률위반 여부 등 검토·처리에 관한 청원(황희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 번호 2200290)

137.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에 관한 청원(김학희 외 50,37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300)

○**위원장 김희정**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7항까지 135건의 법률안과 2건의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원 의원님, 의사일정 제68항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김재원 의원** 존경하는 김희정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난 2026년 5월 4일 대표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해 드릴 기회를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합숙훈련 제한, 기초학력 미달 시 경기 출전 제한, 후원금의 회계 편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여 학교체육 전반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나 잠재력 있는 우수 학생선수를 체계적으로 발굴·육성·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과 지원 체계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인재 육성이 어려운 실정이며 우수 학생선수에 대한 장기적 관리와 성장 지원 역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영재 등 뛰어난 기량을 지닌 학생선수를 조기에 발굴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우수 학생선수의 발굴·육성·보호에 관한 시책 마련을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정** 김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위원회에 출석해서 제안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머지 법률안 등의 제안설명은 노트북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최선영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수석전문위원 최선영입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 총 135건 중 주요 법률안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고민정 의원안은 사회정서역량 교육과 정서행동문제의 조기 발견 및 상담, 전문기관의 운영 등을 통해 학생의 마음건강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제정안입니다.

최근 학생의 마음건강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마음건강의 개념과 사회정서역량 교육의 시행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중앙·지역 진흥원과 지원센터 간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김문수 의원, 강경숙 의원, 조정훈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학원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최근 문제가 된 교원과 학원 강사 간의 시험문항의 거래를 금지하고 제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험의 공정성과 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교원의 경우 징계 등의 기존 제재와 별도로 학원법상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적정인지 그리고 문항거래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 학원의 설립·운영을 3년간 제한하는 것이 다른 학원법 위반 시의 현행 제재 수준 1년과 비교해 균형에 맞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고등교육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외국인 유학생의 학력·학위 검증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증 업무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학위 검증에 대한 대학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검증지원기관의 목적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밖에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컴퓨터 단말기의 자료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희정 최선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대체토론은 현안보고 시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38.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대통령령(안) 법률위반 여부 등 검토 처리에 관한 청원(황희 의원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90)

(14시07분)

○위원장 김희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38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는 20일 심사기간 만료 예정인 대통령령(안) 법률위반 여부 등 검토·처리에 관한 청원의 심사기간을 22대 국회 임기만료 시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9. 현안보고

○위원장 김희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39항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안보고는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장애 사태에 대한 것입니다.

원서접수 마감 직전에 접수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서 원서를 제출하지 못한 수험생이 최대 12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가 구제 접수를 허용하기로 하였지만 먼저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과 뒤늦게 구제받는 수험생 사이에 지원 대학이나 학과 선택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해치는 매우 엄중한 잘못입니다.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이 사태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는 오늘 현안보고를 실시하여 교육부의 책임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부장관 보고해 주십시오.

○**교육부장관 최고진** 존경하는 김희정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9월 11일 대입 수시 원서접수 과정에서 유웨이어플라이의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인해서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불편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입시정책과 관리의 책임자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철저한 후속조치를 통해 불안감을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관련 현황과 조치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현재 대입 원서접수 운영체계는 개별 대학이 원서접수 대행업체와 계약해서 운영하는 구조이며 수험생은 원서접수 대행사를 통해 수시 등 원서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애 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 원서접수 마감일인 지난 9월 11일 금요일 오후 5시 50분경부터 약 30분간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고 18시 20분경에 정상 복구되었습니다. 이에 대응 매뉴얼에 근거해서 19시까지 원서접수를 연장하였습니다.

조치 원칙과 대응 방안입니다.

이번 원서접수시스템 장애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도 수험생 간의 형평성 그리고 대입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교육부와 대교협은 시스템 장애에 따라서 불이익이 발생한 수험생에 대해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구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한편 17개 대학이 원서접수 연장 기간 중 경쟁률을 공개했고 이를 확인한 뒤에 원서를 접수한 사례에 대해 여러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공정성 우려가 많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불공정성이 확인될 경우 해당 대학과 협의해서 접수 취소 등의 조치도 검토하고자 합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특별조사반을 구성해서 오늘부터 9월 23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이번 장애의 발생 원인 등 체계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진행될 정시 모집부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특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책임을 규명하고 공적 원서접수 체계로의 개편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서 안심하고 대입을 치르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정** 앞서 상정한 법안, 청원 그리고 오늘 현안보고와 관련해서 함께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손 들어 주십시오.

○**고민정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저한테 발언권을 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예, 고민정 간사님 말씀하세요.

○고민정 위원 오늘은 이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여야 간에 하기로 하신 위원님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미 사전에 합의를 다 하셨잖아요.

○위원장 김희정 이인선 간사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서범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인선 위원 간사 간에 두 명씩 하는 걸로는 합의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현안이다 보니까 질의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시고……

○고민정 위원 아니, 그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간사 간의 합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인선 위원 합의는 두 사람 했지만 어쨌든……

○고민정 위원 그러면 합의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이인선 위원 아니, 합의하기 전에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보고를 미리 좀 들었잖아요. 우리는 이 보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듣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고민정 위원 보고를 안 들으신 이유가, 보고를 요구하셨습니까? 저희도 보고를……

○이인선 위원 아니, 오늘 현안보고를 지금 요청했잖아요.

○고민정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두 분 저한테 발언권 얻고 해 주시고요.

고민정 간사님은 여야 합의에 둘, 둘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이인선 간사님은 간사 간의 합의는 있었으나 이 건에 대해서 알고 보니 여당은 별도 시간을 가지고 보고를 받았고 야당은 요청했으나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서범수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셨습니다. 서범수, 박정훈 순으로 해 주십시오.

○서범수 위원 서범수 위원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현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입시 공정성을 다루는 겁니다. 이것 국민의 역린을 교육부가 건드린 건데요. 간사 간에 합의를 했니, 안 했니 이것보다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오늘 처음 교육부장관님이 이것과 관련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를 받으면 국회의원은 당연히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확인도 하고 해야지 그러면 교육위원회의 현안보고를 왜 할 것이며 국회의원들이, 교육위원들이 왜 여기 앉아 있는 겁니까? 왜 입틀막을 하려고 그러니까?

○고민정 위원 그러면 뭇하러 합의를 합니까? 이렇게 상임위 운영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위원장 김희정 고민정 간사님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서범수 위원 아니, 이게 두 분께서는 합의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합의한 것도 사실은……

○고민정 위원 ‘모르지만’이 어디 있습니까?

○서범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교육부장관님이 처음 보고를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 나는 것,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교육위원의 입장에서 왜

이야기를 못 한단 말이에요. 왜 입틀막을 하려고 그래요?

○**고민정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사자니까요.

○**위원장 김희정** 말씀하세요.

○**고민정 위원** 오늘 야당 측에서 교육부로부터 보고를 못 받았고 여당만 보고를 받았
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 질문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교육부, 제가 요청하기 전에 먼저 와서 보고하겠다고 하고 하셨습니까? 제가 요청해서
‘궁금하니 이만저만한 것에 대한 현황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요구를 제가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신 거지요. 그러면 이
것도 야당 측도 그렇게 요구를 하시면 됐었던 거지요.

○**위원장 김희정** 고민정 간사님, 잠시만……

○**고민정 위원** 저는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시간 있으니까……

○**위원장 김희정** 하고……

○**고민정 위원** 아니요, 제 시간이 있으니까요.

야당 측에서 했어야 될 일을 하지 않아서 보고를 못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는
오늘 현안이기 때문에 교육부장관께서 지금까지의 현황과 앞으로의 대응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양측 간에 두 사람, 두 사람씩 하기로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다 끝났습
니다. 그러면 이 합의를 파기하실 거였으면 사전에 이유를 얘기하시고 그것을 지킬 수가
없다고 말씀이라도 주셨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할 거면 뭣하러 여야 간사가 있고 무슨
합의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독주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 교부금 관련해서 공청회도 합의하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냥 썩 다 나가면 못 하시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라도 위원장께서는 안 하시는 걸 선택하
시겠습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받아 주시게 되면 향후 여야 간에 어떤 종류의
협상과 합의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파헤치려면 유웨이어플라이를 불렀어야 맞지
요. 그 업체가 지금 이 사건을 발생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업체 사람은 오지도 않았
는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합의에 있지도 않은 내용으로 질의를 다 하겠다고 하시면 저희
로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내시고 지금 합의를 안
지키겠다고 하시면 오늘 공청회고 뭐고 다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끝내시고 유웨이어
플라이를 공식적으로 불러서 차라리 청문회를 합시다.

○**위원장 김희정** 박정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정훈 위원** 고민정 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것 일리가 없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지
금 여당에서는 그 말씀을 따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 자
리를 통해서 이게 왜 문제가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은 뭔지 그리
고 교육부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지 이런 것들을 소상히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다
면 두 명, 두 명 하기로 했다는 그 합의가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형식적이겠
습니까? 이 자리는 이 문제의 진상을 국민들이 알게 하기 위한 자리지 여야 간에 둘, 둘
하는 정도로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자리로 국민들이 이해할 수는 없다고 저는생각합
니다.

그리고 여기 교육부 말고 다른 관련 기관, 업체에서도 와서 설명을 하면 좋겠지만 일단 시급성이 있어요. 이 문제가 불거진 지가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회가 된다면 국민들께서 이 문제를 소상히 알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국회가 하는 일에 더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아마 그 말씀, 저희가 질의했을 때 충분히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오셨을 것으로 봅니다.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한 자리로 오늘 질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강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경숙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의 핵심이 실제로, 아까 특별조사관도 구성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유웨이 어플라이에서 사실은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산장애가 왜 발생했는지 그 장애가 발생한 이후에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이면 밀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혹시나 보안이나 안전성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허술했는지,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지 책임 소재가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제대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문제를 발생하게 한 업체가 와야지 그것은 면밀하게 소상하게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같이 이런 것을 논의하는 게 맞지……

○위원장 김희정 좋은 의견들 잘 들었습니다.

일단 이인선 간사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이인선 위원 사실은 어제 우리 간사 간에 두 사람 정도의, 급하게 생긴 현안질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오늘 방금 제가 안 것은 어쨌든 정부에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여당에 가서 얘기를 했으면 야당도 얘기를 해 줘야지 우리가 꼭 요청해야지 합니까? 모든 정보는 여당이 더 많은데요.

○백승아 위원 윤석열 정권 맨날 때 혼자 보고받으셨잖아요.

○이인선 위원 뭘 보고받아요? 보고를 오늘 처음 본다고요, 지금.

○위원장 김희정 백 위원……

○백승아 위원 그러면 왜 요청 안 했어요.

○위원장 김희정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저도 잠깐만요.

○위원장 김희정 아니요, 자꾸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정리하고 추가로 말씀하십시오.

교육부장관님.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위원장 김희정 위원장인 제가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저한테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

○위원장 김희정 답변하십시오. 제가 교육위원장으로서 저한테 보고하라고 했는데 보고한 사실 있습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저는 해당 국장께서……

○위원장 김희정 있습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실장님께서 어제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위원장 김희정 보고했는지 자체도 파악을 안 하고 들어와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아니, 당연히 했을……

○위원장 김희정 제가 보고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박범계 위원 왜 소리를 지르세요.

○위원장 김희정 잘 들으세요. 교육부가 저한테, 교육위원장에게도 보고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장관 입장 뉘지를 답을 준비해 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박범계 위원 장관이 다운시킨 거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부드럽게 해요, 부드럽게!

○서범수 위원 박 위원님은 가만 계세요. 왜 그래요!

○백승아 위원 첫 번째 회의 때 저한테 끼어들지 말라면서요.

○서범수 위원 아니, 먼저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위원장 김희정 다들 조용히 하시고 위원장이 의사진행 중입니다.

○박범계 위원 오랜만에 회의를 주재했으면 좀 부드럽게 해야지!

○위원장 김희정 교육부장관님, 제 질문에 답변하세요. 이 사태에 대해서 국회 교육위원장실에 보고하라고 한 것 보고한 적 있습니까? 교육부장관님, 보고가 안 됐는지 자체도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위원장님께서 따로 보고를 요청했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참 큰일 날 사람들이네.

○고민정 위원 보고를 하라고 하셨습니까?

○위원장 김희정 예, 시간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9월 14일 12시 3분에 1차, 9월 14일 15시 24분에 2차, 다시 17시 55분에 3차에 걸쳐서……

심지어 보고는커녕 자료제출도 안 됐는데 제가 양해를 했던 이유는 수습하느라고 해당 실국이 바쁜 것 같아서 지금은 국회 보고를 받는 것보다 정말 수습하는 게 급선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대처도 없었기 때문에 마침 잡혀 있는 오늘 회의의 현안보고를 제가 했으면 좋겠다고 여야 간사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개인에게 보고를 해 달라는 게 아니라 국회 교육위원장실에 빨리 보고해 달라, 그러면 이 자료를 가지고 다른 의원실들과 공유하기 위함이라는 것까지 다 공지가 됐습니다.

○정성국 위원 장관님 대답하세요, 빨리.

○고민정 위원 누가 전화를 받으셨는지 하면 되겠네요. 위원장님한테 누가 전화받으셨어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그런데 저는……

○위원장 김희정 제가 한 게 아니라 저희 방 담당 보좌관, 비서관이 돌아가면서 연락했습니다. 제가 몇 시에 연락했는지까지 분 단위로 기록을 다 남겨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무슨 자료 요청했는지까지.

○고민정 위원 결국은 위원장께서 보고 안 받으셨다고 지금 이것 파행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희정 파행이 아니지요.

○고민정 위원 위원장이 보고 안 받았으니까 합의고 뭐고 다 깨자……

○위원장 김희정 아니, 고민정 간사님 제 얘기 끝나지 않았어요. 고민정 간사님이 왜 야당은 당신들이 보고받지를 않고 국회에 와서 이렇게 하냐는 논리를 말씀하시니까 그게 아니라 야당 쪽과 심지어는 위원장 쪽에서도 요청을 했는데 이 공식 회의가 있기 전까지 보고가 없었다는 사실관계를 알려 드리는 거지 고민정 간사, 파행 같은 단어 함부로 쓰지 마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보고가 안 됐는지에 대한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위원장님으로부터 해당 실장, 국장, 과장 누구도 위원장실에서 보고 요청을 따로 받은 일은 없는 걸로 지금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국회협력관 앞으로 나오세요.

요청받은 적 없습니까?

○교육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연갑 국회협력관입니다.

어제 오후쯤에 위원장실 보좌진으로부터 ‘여당에는 보고했는데 위원장실에 왜 보고 안 하냐’ 그런 멘트는 들어서 과에다 전달한 기억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12시 3분 자료제출요구 갖고 3시 24분 갖고 다시 갖고 그 와중에 저희는 시스템으로도 자료요구를 남겼습니다, 유선으로만 얘기하면 딱 얘기 할까 봐. 시스템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유선 통화하고.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담당 부서 전화 연결이 안 되어서 확인해 보겠다’라고 답을 하셨지요?

○교육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연갑 예, 그렇게 기억……

○위원장 김희정 그렇지요?

○교육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연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그 이후에, 담당 부서랑 연결한 이후에 저희에게 연락하신 적 있습니까?

○교육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연갑 그렇게 하고 나서 비서관님하고 통화했습니다, 어젯밤에.

○위원장 김희정 담당 부서 연결이 안 되어 확인해 보겠다고 한 이후에 별도로 자료제출하거나 연락하신 적이 있습니까?

○교육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연갑 과에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위원장실에서 자료 요청하신 것 급하다고 하니까 조속히 제출해 달라는 사항은 계속 전달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장관님 들으셨습니까?

○교육부장관 최교진 지금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그래 놓고 누구 실국장도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요. 국회에 연결하라고 협력관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인내심을 가지고 시스템과 유선 등으로 수습하는 게 급선무기 때문에 상당 시간 기다리고 책임 있는 답변이 오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 위원들은 확인 안 된 걸로 야당을 공격하는 것 같은데 오늘 제가 현안질의를, 이걸 마련하지 않았으면 아예 국회 교육위원장실이나 야당 쪽으로는 보고할 의사가 없는 걸로밖에 확인이 안 됩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자 함이고 저는 고민정 간사가 얘기한 대로 두 가지 면에서 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여야가 현안질의에 대해서 2명씩 질의하

기로 합의를 했다, 저는 간사들의 합의를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 다만 현안질의를 별도로 질의로 빼지 않고 법안 질의와 묶어서 하기 때문에 법안 질의까지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것은 여야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의 문제지 둘 다 말할 수 있는 논리는 있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파행이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현안질의를 둘 둘 하겠다라는 합의 정신도 존중하고 법안과 관련해서는 모든 위원들이 다 질의를 할 수 있고 시간이 부여됐다는 것까지 같이 존중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문수 위원 저 발언 기회 좀 주세요.

○위원장 김희정 그래서 제가 아까 손 들라고 했지요?

현안질의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김문수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 번만 하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김문수 위원님.

○김문수 위원 아까 기다렸습니다, 여태.

교육부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하고 또 위원장님하고의 관계는 거기서들 알아서 해결하세요.

○위원장 김희정 예. 그런데 그것을 핑계로 회의 진행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문수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그리고 여야 간의 신뢰와 합의라는 게 있잖아요, 간사 간의.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육부하고 상관없는 얘기에요. 우리끼리의 약속은 일단 지키고 설령 이것을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될 경우도 미리 그러면 연락을 해서 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안 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미리 간사님이 합의를 해서 갖고 이걸 진행해야지 그전에 했던 걸 완전히 무시하고 중간에 완전히 생략하고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면 그냥 힘으로 하자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위원장 김희정 김문수 위원님 발언에 동의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래서 그렇게 꿈수식으로 하지 마시고 여야 간의 합의는 합의대로 하고 그다음에 아까 교육부하고의 관계는 본인들끼리 알아서 잘 푸시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건가를 다시 얘기해 주세요. 밀어붙이시면 안 됩니다.

○정성국 위원 저한테 좀……

○박범계 위원 제가……

○위원장 김희정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 현안질의하겠어요. 이걸로 의사진행발언은 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야 간사들의 합의를 존중한다고요.

○박범계 위원 위원장님, 한말씀만……

○위원장 김희정 박범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범계 위원 보니까 그렇게 그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고민정 간사께서 합의 정신을 존중해라라는 것은 절차법이니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위원장님께서도 그걸 인정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유웨이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가 그러면 없느냐. 어쨌든 여야 간에 2명씩, 2명

씩 하기로 했으니까 현안질의가 있는 거고, 현안질의를 하기로 한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부는 어찌 됐든 장관께 제대로 보고가 안 돼서 위원장님께서 자료제출이든 어쨌든 대면보고든 요청한 정신이 반영이 안 됐으니까 그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고민정 간사께서 지금 이것이 오늘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먹통 사태의 당사자인 유웨이 업체가 함께 하는 청문회든 뭐든 언제든지 그것이 필요한 일이다라는 얘기를 말씀하셨고 강경숙 위원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역시 오늘의 핵심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공청회니까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현안질의는 다시 두 분 간사님께서 둘 플러스 일을 하든지 조금 더 늘리든지 한번 위원장님, 두 분 나가셔서 합의를 좀 하고 오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잠시 나갔다 오세요, 두 분 간사님.

(「좀 부드럽게 그것도……」 하는 위원 있음)

저한테…… 제가 얘기할 때 끼어들지 마세요.

교육부장관님, 잠시만 두 분 간사님 나오셔서 법안 질의와 현안질의를 따로 할 건지, 말씀하셨듯이 다 합쳐서 둘 둘 할 건지, 투 플러스 원이라도 할 건지 빠른 시간 내에 얘기하고 오십시오. 그동안 저는 교육부의 얘기 좀 듣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시지요.

○위원장 김희정 아니요. 잠시 갔다 오십시오.

그동안 교육부장관님.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위원장 김희정 그쪽 현장에서 제가 한 질의에 대해서 실국장님들의 답변과 협력관의 답변을 듣고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최고진 위원장님께 자료제출은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따로……

○위원장 김희정 언제 했답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어제 그러니까 15일 실제로 담당 실국에서 이 문제 수습에 모든 총력을 기울이느라고 자료 준비 자체가 늦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제출을 했고……

○위원장 김희정 9월 15일 10시 10분에 제가 제출한 자료 중의 극히 일부만 보내왔습니다.

○교육부장관 최고진 자료제출을 일단 그때까지 준비된 것을 드렸고……

○위원장 김희정 죄송합니다. 제가 일일이 다 읽어 드리고 뭐 제출됐는지 말씀드릴까요? 극히 일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밤 10시 10분에.

○교육부장관 최고진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만 말씀드리면 그리고……

○위원장 김희정 교육부장관님.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위원장 김희정 그러면 교육부의 이 행정적인 대처가 원만하고 모든 게 순조로웠다고 판단하시고 저에게 지금 설명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아닙니다.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그냥 저의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교육부의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국회에 보고하는 전반적인 태도에 대

해서 입장을 밝혀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부장관 최고진**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가 있을 때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일정하게 질의를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답변은 그때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실제로 그때 당시에 교육부 안에서도 이 사태에 관해서 이걸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수습해야 될 것인가, 한 명이라도 수험생들에게 혼란이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국회에의 보고절차가 제대로 좀 부족했었던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 따로 보고드리지 않은 것을 뒤늦게 알고 차관께서도 위원장님께 위원장실을 통해서 보고드리러 가려고 했으나 올 필요 없다고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교육부장관님, 역시 교육부로부터 계속 엉터리 거짓말 보고를 받고 계시네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현안질의, 교육부 질의가 있어서 그 자료는 공유를 했습니다, 서범수 위원님이 대표로 질의를 했고. 그런데 거기에서 부족한 내용을 재차 시스템상으로 그리고 유선으로 요청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협력관도 담당 부서와 연결이 안 된다고 하고 저희들이 일과 시간이 끝나도록 어떤 연락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교육위원회만 보고가 안 되는지, 여당하고는 협조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당 쪽에 알아본 결과 여당 쪽에는 이미 보고가 됐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 저희 스태프들을 통해서 자료는 똑같으니 이쪽에 자료라도 보고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 일과 시간이 끝날 때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 밤 10시 10분에 저희가 ‘왜 여당에게만 보고했느냐’라는 항의를 듣고 일부 자료만 보내왔습니다.

이 모든 게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여당에 한 것도 어제였고 위원장님께 어쨌든 자료제출한 것도 어제……

○**위원장 김희정** 시간대가 다를 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보고……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시간대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위원장님께는……

○**위원장 김희정** 적절했다고 보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 최고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장관님이 자기 부처에서 연락을 받지 않았다, 요청을 받지 않았다, 보고가 이루어진 걸로 안다, 그러면 밤 11시 59분에 됐어도 그 날짜겠지요. 그렇지요?

앞으로 국회에서 향후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지난하게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자료제출이나 보고 가지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는 차관이 업무보고 오겠다는 것은 오늘 이 회의를 잡은 이후에 점심시간 다 돼서 2시 회의 직전에 잠시 먼저 보고할 수 있겠냐라는 얘기를 들었고 저는 그 시간에 원내대표단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보고받기는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2시 회의 잡힌 다음에 회의 들어가기 직전에 잠시 보고할 수 있겠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적절한 보고가 아니라 면피용 인사를 하려고 간 거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어떤 경과가 있었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러 국민들을 대표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제 이메일로 그리고 제 문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공유했으면 한다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국회의 대표로서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대응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 정도가 아니라 바로잡아야 될 것입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 앞으로 국회에 요청하는 자료에 관해서 최대한 철저하게 적절하게 보고드리도록 할 것이고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제출을 가지고 장난치거나 할 생각도 없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여야 간사님 어떻게……

○**이인선 위원** 지금 간사 간에 협의, 그동안에 2명, 2명 현안질의로 한 것은 지켜 주시고 어차피 지금 교육부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웨이나 시스템 회사를 불러 갖고 다시 우리가 날짜를 정해서 전체 다 질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두 분 간사님, 두 사람, 두 사람 현안질의하는 걸로 하고.

교육부는 당사자가 맞습니다. 교육부가 당사자입니다만 더 상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해당 업체까지 불러서 추가 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여야 간사 간에 빨리 합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손 들어 주십시오, 현안 관련해서.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만 손 들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쪽에서는 그러면 박정훈, 서범수 그다음에 3당 두 분 다 하시고 민주당에서는 김문수 위원님만 하십니까? 김문수 위원님 혼자 하십니까?

○**김준혁 위원** 예.

○**위원장 김희정** 그러면 제일 먼저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민정 위원** 왜 서범수 위원님이…… 서범수 위원님은 아니잖아요.

○**김준혁 위원** 서범수 위원님 하기로 하셨어요.

○**고민정 위원** 이렇게 둘하고 두 분 다 하시고? 그러면 합의된 게 아니지요.

○**김준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서범수 위원님하고 이주영 위원님하고 하시고 여기는 김문수 위원님하고 강경숙 위원님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정리가 된 거지요, 지금.

○**고민정 위원** 서범수 위원님, 이것은……

○**김문수 위원** 약속한 대로, 원래 약속한 대로……

○**위원장 김희정** 지금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여야 3당 둘 둘 둘이 아니라 합쳐서 둘 둘 하기로 했습니까?

○**고민정 위원** 예, 다 합쳐서 둘 둘, 넷……

○**위원장 김희정** 그러면 이쪽에서는 손 들어 주십시오, 누구인지.

김문수 위원님하고 강경숙 위원님 하시기로 하셨고 그리고 서범수 위원님하고 이주영 위원님하고 두 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으니 축약적으로 국민들의 궁금증을 짧은 시간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장관님, 우리나라의 대입은 단지 학교 진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

의 관심사인 것은 틀림없는 문제입니다. 그런 만큼 굉장히 민감한 이슈인데요.

장관님, 이번에 서버 전산장애를 일으킨 업체는 민간기업인가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진학사하고 유웨이 두 민간기업인데 여기서 과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딱 2개 업체만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강경숙 위원** 대입이라는 것이 교육의 공적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추구하는 이런 민간기업에서, 그것도 독과점 형태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혹시 그런 문제가 있는지도 이번에 제대로 살펴보고요 합니다.

○**강경숙 위원** 교육부에서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시도를 했었더라고요. 2013년 인데 법원이 유웨이와 진학사가 제기한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 구축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가처분이 인용되었어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그것을 계속할 수가 없게 되어서 지금 까지도 이 2개의 민간업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입절차의 안정성이라든지 보안성·공공성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기업의 손에만 이것을 맡겨 두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방기되어 온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원서접수 과정에서 전산장애가 일어났던 것이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몇 번 정도 일어났지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

○**강경숙 위원** 아무튼 한 번이 아니지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두 차례 있었던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강경숙 위원**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은 정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번에 제대로 진단을 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손을 쓰셔야 될 텐데요. 이것이 과점으로 경쟁하는 상태다 보니까, 학생들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투자 그리고 대입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서버 안정성 투자 이런 것에 대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저 수수료를 올리는 경쟁 그리고 대입에 대한 어떤 리베이트, 대학에다가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그런 것들의 경쟁이 오히려 더 치달아서 이런 문제까지 발생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2025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해서 시정명령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되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 사태를 초래한 유웨이어플라이에는 어떻게 장애가 있었는지 왜 있었는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굉장히 면밀하게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조사반 오늘부터 가동하신다고 그러셨나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강경숙 위원** 굉장히 단단하고 또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약속하시겠습니까?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강경숙 위원** 업체 얘기를 좀 해 보고 싶은데요. 실은 수시 원서접수 전날인 목요일에도 일시적으로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원서접수 당일에도 제대로 조치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난 것인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조사반에서 제대로, 그런데 어떤 규모로 어떻게 구성하고 계십니까? 장관님, 특별조사반은 어느 정도의 규모로 구성하고 계십니까?

○**교육부장관 최교진** 전문성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회계담당까지 포함해서 구성해서 철저하게 해 보려고 합니다.

○**강경숙 위원**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이번에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핵심을 잘 짚어 주셔서 제대로 정확하게 한번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대교협이 누가 나와 계시나요? 대교협의 나와 계신 분은 없나요?

사실 대교협이 안일함을 키운 것도 사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교협에는 지난 금요일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장애 시간의 1.2배를 30분 단위로 연장한다는 매뉴얼은 있습니다만 문제가 있을 때 홈페이지 팝업 안내 그리고 알림톡 발생 정도가 전부였어요.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나면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교협의 매뉴얼에 공지 방법들이 면밀하게 수립되지 않았습니니다. 교육부에서 그런 걸 간파하고 계셨나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매뉴얼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번 상황이 발생하고 보니까 매뉴얼에 좀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이 확실히 드러났다고 보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이번에 교육부에서는 장애 오류 로그라든지 원서접수 이력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구제대상 학생들의 기준을 엄격하게 최소화한다고는 하는데 12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지만 구제기준을 정확하고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 실제 구제대상은 몇 명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알아보셨나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50명 정도 될 것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경숙 위원** 이것이 굉장히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교육부장관 최교진** 정확한 숫자를……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구제에 그 기준 적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도 억울함이라는 것을 느끼지 않도록, 미리 그것을 어플라이한 학생과 그 이후에, 50분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알고 신청한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도 몰라서 놓친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문자로 온 것도 확인이 안 되거나……

여러분, ‘수만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수능 날 만점 시험지를 휘날리며’라고 하는 그 학생들이 보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도 이것이 다 올라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본 학생들은 경쟁률이 얼마인지를 다 알았을 거고 그것조차도 파악을 못 한 학생들은 거기서 누락이 된 것인데 그러면 어떤 학생이 더 불공정에 노출된 것인가에 대한 것도 면밀하게 보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 아마 추가질문을 위원님들께서 또 해 주실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오늘 10시까지 구체신청에 접수된 것은 한 1200여 건인데 잠정적으로 구체대상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는 건 한 250여 건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영 위원** 개혁신당 이주영입니다.

장관님, 피해 규모를 방금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이번 피해 규모……

○**이주영 위원** 250명 정도라고 방금 답변하셨지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1200명 정도가 구체신청을 했고요 그중에서 잠정적으로 구체 가능한 것이 한 250여 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주영 위원** 장관님 보시기에 지금 몇 명이 그런 피해를 받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구체적으로 피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미리 원서를 냈는데 뒤늦게 한 친구들이 있어서 혹시라도 경쟁률이 높아졌으면 어떡하나 하는 심리적인 피해까지를 생각하면 훨씬 더……

○**이주영 위원** 지금 그게 웃으면서 말씀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아닙니다. 웃으면서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주영 위원** 대학입시라는 건 대한민국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 중에 하나지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그렇습니다.

○**이주영 위원** 아마 장관님도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침대로, 심지어 서버가 불안정할 수 있으니까 미리 접수하라는 지침을 성실하게 수행을 하고 또 적어도 그 시스템을 잘 운영해 줄 거라는 대한민국 교육부를 믿었던 학생들, 그래서 미리 접수에 성공했던 학생들도 지금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면 그 학생들도 모두 피해자예요. 지금 접수한 학생들이 50만 명쯤 됩니다. 그 가족들까지 더하면 피해 규모가 몇 명입니까?

이걸 지금 구체를 250명 할 거다, 파악된 게 1200명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정부에서 추산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장관님이 책임지겠다고 하셨잖아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이주영 위원** 접수 마감 1시간 연장 결정한 것 장관님이 하셨다고 발언하셨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이주영 위원** 유웨이는 그런데 그러면 진학어플라이도 장관님께서 지시하셨어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아닙니다. 지시라고 하기보다는 실제로 아까 처음에 보고……

○**이주영 위원** 어쨌거나 교육부에서 그렇게 하자고 지침이 내려간 거지요? 1시간 연장을 교육부의 확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한 건 아니잖아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아닙니다.

○이주영 위원 아니지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매뉴얼에 따라서 하고 조치한 것을 교육부에 통보했고……

○이주영 위원 장관님, 이게 발생한 에러에 대한 대책이 나오는 것과 에러가 없었던 기관에서 28분의 추가 지원 기회를 얻은 건 좀 다른 문제예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위원님……

○이주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접수를 못 한 학생과 제대로 접수한 학생 간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요. 이건 문제가 두 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1200명이다 50만 명이다, 이걸 보는 관점이 이렇게 저와 다르다는 것은 장관님께서 지금 뭘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연장 지시를 교육부 차원에서 장관님이 하셨건 누가 하셨건 연장하라는 건 교육부에서 지침 나간 것 맞지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아닙니다.

○이주영 위원 아니에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게 매뉴얼에 따라서 이미 그렇게 조치를 했고 회사에서는 그걸 수습하고 대교협에 일정하게 보고를 했고 대교협을 통해서 저희 교육부에……

○이주영 위원 매뉴얼 말씀하시는 게 표준공통원서 접수서비스 장애대응 매뉴얼 이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장애……

○이주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경쟁률 공개 관련된 규정 있습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그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연장한 부분 말씀드립니다.

○이주영 위원 시간 연장이 있는데 시간 연장을 하려면, 경쟁률이 정시에 공개되지 않습니까?

지금 자꾸 책임을, 이게 원래 매뉴얼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것 관리 누가 하시는 건데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제가 기본적으로 아까 현황보고를 이미 드렸었는데요, 그 발생 시점이나 서버 오류가 발생되고 나서 쪽 진행됐던 상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실제로 그런 오류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장애를 접수하고 접수를 연장하는 것을 결정해서……

○이주영 위원 장관님, 제가 내용을 몰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매뉴얼도 제가 봤어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그래서 이걸 교육부에서 연장을 결정하지는 않았다는 거지요.

○이주영 위원 선관위 사태 왜 이렇게 됐는지 아세요? 선관위 사태 왜 이렇게 됐는지 아세요? 투표를 아직 못 한 국민들이 있는데 투표 종료가 됐지요. 그리고 득표율과 당선자가 공개가 됐어요. 그때 아직 투표 못 한 국민들이 있었고요. 그때 매뉴얼이 없고, 득표율을 공개하면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선관위에서도 매뉴얼이 없었어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장애대응 매뉴얼……

○교육부장관 최고진 그것이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건 좀……

○백승아 위원 선관위는 독립기관입니다.

○이주영 위원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 질의 시간입니다.

장애대응 매뉴얼은 있었으나 경쟁률 공개 관련 규정이 아예 없지요. 아예 없지요? 있습니까? 아예 없지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경쟁률은 마감이 되고 나서 원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주영 위원 그런데 이미 경쟁률이 공개되고 그 이후에 접수한 학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취소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그 부분 잘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영 위원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국가에 대한 첫 경험을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위원님의 우려에 대해서는 어쨌든 입시를 총괄하고 있는 교육부장관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만 이걸 무슨 지난번 부정선거……

○이주영 위원 지금 부정선거 얘기가 아니에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아니, 투표를 그것과는……

○이주영 위원 국가의 매뉴얼이 똑바르게 운영되지 않았고 미리 준비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육부장관 최고진 이것은 실제로 매뉴얼대로 운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장애가 발생한 것이 문제였지 장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매뉴얼대로 진행이 된 것입니다.

○이주영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2차 질의 안 하겠습니까.

○고민정 위원 아니, 2차 질의 원래 없습니다.

○이주영 위원 장관님, 그러면 이것 매뉴얼에 안 써 있는 건 국가의 책임이 없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안 돼 있으면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총체적으로는 입시와 관련된 것이어서 저는, 지난번에 본회의 때 서범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도 제가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이 일에 관해서는, 아까 처음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업무를 대학으로부터 대행을 맡은 두 회사와 대교협 사이의 문제인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감독을 한다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교육부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일 자체, 장애가 일어난 상황이나 거기에 대한 대처는 일차적인 책임이 그 업체나 대교협이, 대학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주영 위원 장관님, 지금 학부모님들이 다 보고 계세요. 책임이 없지는 않으나 그들이 일차적으로 책임질……

○백승아 위원 위원장님, 시간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주영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추가로 업체 관계자나 대교협 등등 오늘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여야 간사가 합의한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한 수습·해결도 중요하고 향후 재발 방지까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수 위원 순천갑 김문수 위원입니다.

이번 사건은 일단 장애가 발생하지 않고 6시에 정상적으로 마감이었다고 하면 원서를 제대로 접수했을 사람 또는 정상적으로 돌아갔어도 접수가 안 됐을 사람, 이것을 원래 정상으로 됐을 때하고 똑같이 복구시키는 공정함이 가장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해 보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패널을 들어 보이며)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이십니까?

17시 50분 이전에 로그인을 시작해서 마지막에 작성하고 제출하고 결제까지 완료를 하는데 저희들이 실제 실행을 해 봐야 되겠지만 하면 한 3분 정도 소요된다고 그러합니다. 그러면 17시 50분 이전에 로그인하고 작성까지 한 경우는 구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그렇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다음에 유웨이 회사에 로그인을 했다가 장애가 발생해서 급작스럽게 진학사 쪽으로 빨리 회사를 바꿔서도 가능한 경우도, 이런 경우도 구제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구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 그러니까 17시 50분 이후에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때 로그인을 시도했지만 장애가 발생해서 로그인 흔적이 이때부터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18시 20분부터, 복구해 가지고 그때 접수를 하신 분들, 이분들은 구제가 가능한 겁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실제로 로그 기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구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중에서 이미 경쟁률 공개를 한 대학 같은 경우에 경쟁률을 확인하고 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전에 정상으로 과정을 마친, 접수한 친구들에게……

○김문수 위원 아니요. 장관님 잘 보세요. 이게 한 3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정상이었다면 51분에 접속한 사람은 54~55분까지 충분히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게 정상적이었다면. 그런데 문제는 50분부터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시도하다가, 흔적이 남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51~55분까지 접속한 사람은 제출까지 3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충분히 6시 정각 되기 전에 이분들은 접속이 가능했던 사람들인데 문제는 흔적이 없어서 이분들을 구제를 못 해 줘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큰 고민거리라고 보입니다.

물론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방법이 없긴 한데 가장 억울한 사례가 이런 분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방법이 있습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실제로 기록이 현재로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작성했거나 저장, 제

출, 결제까지 4단계 중에 무엇을 했어도 사실은 기록을 찾아보면 남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없을 경우에 구제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을 수 있는데 이분들이 가장 억울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정말 제가 봐도…… 증거가 없으면 방법이 없을 수는 있겠습니까마는 이런 억울함이 발생됐다. 그런데 이번에 왜 이런 장애가 발생된 것을 미리 찾아내지 못하고, 교육부에서 여기를 감독을 못 했습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문제가 된 겁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장애가 있었던 것을, 그 전날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을 해결했고 그것을 대교협에까지는 보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원만히 해결됐다는 상황을 교육부 담당에게는 구두 보고만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대로 챙겨 보지 못한 아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철저히 그 과정 하나하나를 따져 보려고 합니다.

○**김문수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민간업체하고 계약에 있어서 늘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큰 잘못을 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처벌이나 계약 해지 이런 요건은 없습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그런 것까지도 이번에 정말 제대로 조사하고 아예 정부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처벌도 없고 계약 해지도 안 되니 아주 마음 편하게 이렇게 해 버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정** 수고 많으셨습니다.

12년을 이 원서접수 한 장을 위해서 달려온 사람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심지어는 재수, 삼수를 하면 13년이 되고 14년이 되고. 정말 온 나라가 숨죽이고, 수능 접수일이 무슨 날인지…… 사실 평소에 자기 생일 까먹고 지내는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수능 접수일 정도는 기억할 정도로 중대한 일입니다.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회와 교육부의 답변·질의 내용을 많은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교육부장관님의 책임 있는, 그리고 정말 이 문제는 잘 해결을 하겠다. 내가 주무부처 장관이다라는 그런 딱부러지는 태도가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질의답변과 업무보고 중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앞서 말씀 드렸듯이 자료 요청이나 업무보고 요청했는데 지금까지도 답이 안 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수 연장이 오후 6시 10분에 결정이 되었는데도 최대 1200여 명이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면밀히 조사해서 정확한 답변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장관님은 그런 의문 드시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매뉴얼에 따라서 연장을 했는데도 왜 접수가 안 됐을까? 그러면 접수 연장 결정과 즉시 대행사나 대교협이나 학생들에게 공지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행사에서, 결정을 하고 상황 복구를 하고 대교협을 통해서 각 대학에 이러이러한 일이 발생했음을 알리고 학생들에게 다 알리도록 했는데 전달을 늦게 받았거나 전달을 받고도 그걸 포기를 했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희정 제가 구체적으로 결정해서 대행사의 공지 그리고 대교협 안내 등등의 시간, 제가 대교협이나 대행사 등등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몇 분 늦었는지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는데 장관님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는지 확인 못 하고 계십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구체적으로 시간 단위로 그 상황이……

○위원장 김희정 장관님,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그런데 왜 시간이 연장이 됐는데도 접수가 안 됐냐면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행사 공지까지는 20분, 대교협 안내까지는 25분이 소요가 됐습니다. 즉 매뉴얼이 있다 하더라도 시행이 안 된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책임은 교육부에 있고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 나와서 답을 하는 게 교육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 중에 특별조사반 구성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사람이고 회계 담당자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는데 사고를 일으킨 업체가 다시 피해 검증의 주요 임무를 맡게 된다는 점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실제로 검증을 하는 데는 그분들의 역할이…… 그분들이 어떤 과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단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특별조사단에 대교협의 IT 전문가나……

○위원장 김희정 제 질문에 대답해 주십시오.

해당 민간업체가 여기 특별조사단에 같이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조사단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실제로 조사에 응해야 되겠지요.

○위원장 김희정 응하기만 하고 책임 있는 결정이나 이런 자리에는 민간업체에게 다시 권한을 주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희정 피해 검증을 사고 당사자인 피해 업체에게 주어지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역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 나왔었고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 정리하고 갔으면 합니다.

오늘 1페이지 주셨거든요. 그렇지요? 여기의 기본원칙에 대해서 장관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서접수시스템 장애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한 수험생에 대한 구제를 검토하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불이익이 발생한 수험생의 종류는 어떤 수험생의 종류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최고진 원래 장애가 없었으면 당연히 접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장애가 나

타남으로 인해서 포기했거나 더 주어진 시간에 그걸 한 친구들이나 그렇게 한 분, 학생들이 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희정 그러면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불이익이 발생한 수험생은 접수를 하지 못한 학생만 포함하는 거고 먼저 접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발생한 수험생의 카테고리 안에 넣고 있지 않다라는 답변으로 들립니다. 맞습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먼저 접수한 수험생은 사실은 불이익이라고 할 게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혹시라도 경쟁률이 발표된 후에 접수된 것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경쟁률이 더 높아지는 부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그런 경우도 불이익을 받는 수험생에 들어갈 수 있는 카테고리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답변 중에 ‘매뉴얼에 따라서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매뉴얼에 있습니까만 별도 날짜를 지정해서 추가 접수하도록 하는 게 매뉴얼에 있습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아닙니다. 그 부분은 대교협의 제안을 받아서 교육부에서 같이 승인을 해 줬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매뉴얼에 없습니다.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하는 게 첫 번째는 당일 연장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까만 별도 날짜 추가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끝까지 ‘매뉴얼에 있었다’라는 답변으로 2개를 함께 답변하는 태도는 정확하게 사태를 대처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답변이고 태도라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오늘 나왔던 질의 종합해서 정리해서 교육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여야 위원님들 함께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불이익도 생기지 않도록 교육부장관님은 주무부처 장관이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범수 위원 서범수 위원입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특히 수험생이나 학부모님들께서 이 장면을 보시면 억장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오늘 장관님이 답변하시는 태도를 보면…… 그리고 인식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게 유웨이라는 업체의 문제지 왜 교육부를 가지고 자꾸 책임을 지라, 마라 하느냐 그런 식의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원서접수를 비롯해서 대학 입시의 최종적인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장관님?

○교육부장관 최고진 대학 입시 전반에 관해서 교육부가 일정하게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수시 원서접수는 대학 입시의 가장 첫 출발점이지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면 당연히 교육부가 모든 책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최교진**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서범수 위원** 볼 수 있다고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왜냐하면……

○**서범수 위원** 그렇게 인식하는 장관님을 앞에 놔 놓고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피해 구제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야기하는 게 맞나요? 과연 올바른 대책이 나올 건가 하는 의심이 엄청나게 들어요,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장관님이 ‘일부 책임은 있는 것 같으나’,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수시 원서접수라는 게 민간업체한테만 맡겨 놓는…… 공적인 영역이 아닙니까? 대학 입시의 과정이 아닙니까?

장관님, 답변해 보십시오.

○**교육부장관 최교진** 대학 입시의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는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에 있어서는……

○**서범수 위원** 왜, 그 과정 하나하나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되는 게 교육부잖아요. 그러면 총체적인 책임은 교육부장관한테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민간업체한테 넘겨요, 그 책임을?

○**교육부장관 최교진** 넘기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일은 차질 없이 하도록 해서 대학과……

○**서범수 위원**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나왔다고요. 문제가 터졌잖아요.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교육부장관 최교진**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최대한 수습하고 조치하고까지 저희가 하고……

○**서범수 위원** 아니, 내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책임을, 대책을 지금 만들어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서범수 위원** 지금 인식이 그렇잖아요, 장관님 인식이.

○**교육부장관 최교진**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제 인식을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리고 지난 9월 14일 날 대정부질문 때 장관님께서 ‘지시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그것은 실제로 보고를 받고 제대로 잘 수습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범수 위원** 지시를 하셨다고…… 지금에 와서 또 말이 바뀌어, ‘매뉴얼대로 한 걸 그냥 보고받았습니다’.

지시하셨습니까?

○**교육부장관 최교진** 보고받고 잘 수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면 이게 먹통이 됐다고 보고받은 적이 언제입니까, 교육부장관님? 정확한 시간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정확하게 6시 43분으로 제 통화……

○서범수 위원 6시 43분예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서범수 위원 17시 50분에 먹통이 됐는데 50분이 흘러서 이걸 합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저한테 정확하게 보고된 시간은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면 ‘1시간 연장해라’라고 지시한 것도 장관님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렇지요, 7시까지?

○교육부장관 최고진 아니요. 1시간 연장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받고 알았고 그 매뉴얼대로 했으니까 잘 수습해서 학생들에게, 수험생들에게 누구도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범수 위원 아니, 이 중요한 사항이 장관님한테 다 조치하고 나오는 겁니까? 장관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서범수 위원 그냥 사후 보고만 받으니까? 사후 보고만 받는 자리가 장관님 자리입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그렇지 않습니다.

○서범수 위원 다 그렇잖아요, 지금. 18시 43분에야 이 보고를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교육부장관 최고진 그러니까 유웨이 그 회사에서 장애가 발생하고 나서 이걸 해결하는 데 30분이 걸렸답니다. 그래서 20분까지 하고……

○서범수 위원 아니, 그러면 먹통이 됐을 때 제일 먼저 대교협을 통해서 장관님한테 보고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그게 늦어졌습니다,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서범수 위원 늦어진 게 아쉬운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지금 50분이나 늦어졌어요. 수험생들은……

○교육부장관 최고진 그런 과정을, 그러니까 대교협에 보고한 시간이 늦어진 것, 대교협에서 교육부에 실질적으로 통지가 늦어진 것에 관해서 이번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러지 않도록 하는 수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체 과정에 대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저는 장관님을 못 믿겠어요. 왜냐? 내 책임이 아닌데 왜 자꾸 나보고 책임을 지고 대책을 만들어라 하느냐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제 인식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런 분한테 이 대책을 맡겨서 되겠느냐……

이 업체가 또 정시도 하지요? 정시모집도 하지요? 아닙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서범수 위원 대답하세요. 합니까, 안 합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입시와 관련해서 현재 제도로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범수 위원 뭘 좀 알고 합시다, 장관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업체가 작년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의 시정명령까지 받았습시다. 그렇지요? 대학 발전기금 내야 된다고…… 다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시정명령이……

○서범수 위원 받았잖아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서범수 위원 교육부에 통보가 왔을 거잖아요? 교육부 조사 의뢰해서 했지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조사 의뢰했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으면 왜 작년에 교육부에서 조치를 안 했어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실제로 시정명령하고……

○서범수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가 터진 것 아니에요, 이 문제가 지금. 교육부가 아무런 역할도 못 하고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그리고 사고 터져도 비상대응은 빵점……

국민들이 다 판단하실 겁니다, 이걸 보시고.

○교육부장관 최고진 어쨌든 지금 마지막 질문 주신 2023년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교육부에서 공정거래위에 조사를 요청했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시정명령과 주의 촉구는 있었는데 별도의 과징금 지시가 있거나 하는 정도는 아니어서 그것에 관해서……

○서범수 위원 그 정도 위반행위가 있으면 이게 문제가 있다고 교육부에서 쳐다봐야 될 거잖아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아니요. 그래서 계약을 해지할 정도인지에 관해서는, 이건 실제 계약 주체가 교육부는 아닙니다. 잘 아시지만……

○서범수 위원 또 자꾸 교육부가 아니라고 하세요, 그래.

○교육부장관 최고진 아닙니다. 대교협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 인식은, 수험생 한 명이라도 이런 일로 상처받는 것에 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인식은 같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면 잘 정리를 하고 진상조사하고 대책을 세운 뒤에 책임질 분야에 대해서는 책임질 만큼 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서범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정 서범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님, 아까 책임은 느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수험생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하시지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아까 위원님들께도 맨 처음에 이렇게 입시정책 전체에 관해서 일정 책임을 지고 있는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는데 특히 이번 일과 직접 관련된 학생들이 있다면 적어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조사해서 구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흔들리지 말고 준비한 대로 대학입시를 잘 치러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일로 걱정이 많으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일을 제대로 조사해서 그 이후에 대책을 잘 마련해서 꼭 보고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

오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희정 미안한 감정은 전혀 없으십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희정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스템 사고에 대해서 여러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접수 연장 공지 등이 지연된 사유 그리고 매뉴얼상에 경쟁률 공개 내용이 부재한 문제 그리고 구체적인 구제 대상별 공정성 문제 해소 방안 그리고 특별조사반 구성의 공정성 확보 방안 그리고 대교협이나 업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과 교육부의 책임 등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하고 보고하고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위원장 김희정 이것으로 수시모집 원서접수 장애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교육부는 사태 해결과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그리고 앞서 상정한 법안과 청원을 소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합니다만 현재 우리 위원회는 소위 구성이 아직 완료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추후 소위가 구성된 이후에는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감계획서 등을 의결할 차례입니다만 아직 간사 간에 합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간사님들께서는 원활한 국정감사 수행을 위해 조속히 합의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9월 29일 오후 2시에 별도 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청회를 진행할 순서인데 장내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정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

○위원장 김희정 의사일정 제143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석한 진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성명순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님, 남수경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장님, 송기창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총장님, 전은영 교육재정 긴급행동 집행위원장님.

(인사)

바쁘신 중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는 교육부 최은옥 차관, 김홍순 정책기획관, 이강복 교원교육자치지원관 그리고 기획예산처에서는 강영규 미래전략실장, 임영진 재정혁신정책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그리고 조용식 울산광역시교육감도 공식적으로 저희가 배석을 요청했구요. 확인해 보니 그 외에도 여러 시·도교육감님들께서 지금 방청석에 앉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참고해 주십시오.

공청회 진행에 관해 말씀드리면 공청회는 진술인의 발언을 차례로 들은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청회는 위원회 회의로 진행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할 수 있고 진술인 상호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주요 내용 위주로 각자 10분 내에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학수 위원님 진술 부탁드립니다.

○진술인 김학수 안녕하십니까? KDI 김학수입니다.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내국세 연동방식의 두 가지 문제점, 교육 수요자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예산 총량을 기계적으로 산정해서 지나치게 많거나 또는 변동이 심한 형태의 국가재정을 선배분하는 문제점과 매우 큰 폭의 세수 변동성이 그대로 교부금, 교육재정의 변동성으로 전이되는 문제점을 완화하려는 시도로서 이번 개정안의 정책 방향에 매우 공감합니다.

개정안은 내국세수의 20.79%와 교육세수 일부로 결정되던 교부금을 명목성장률, 학령인구의 변화율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편함으로써 35%라는 가중치가 붙기는 했지만 교육 수요자 변화뿐만 아니라 실질소득과 물가의 변화를 반영해서 기존 방식보다 훨씬 합리적으로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속 확대하는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과 결산의 차이를 사후 정산하던 제도가 있었는데 세수 변동에 따라서 정산 결과가 반영되다 보니 또 교육재정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산식에 의해서는 정산제도 폐지가 매우 논리적으로 귀결되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개정안은 시대적 우선순위에 따라 한정된 국가재원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새로운 산식도 여전히 내국세 연동방식과 비슷하게 교육재정 자체에 배분된 총량 자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기제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구요. 그렇지만 정책 환경, 정책 목표 그리고 국가재정의 여건을 고려해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미래세대에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한 공공부분의 상시적인 노력의 일환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중앙정부 부담은 국회에서, 지방정부 부담은 시도의회에서 매해 교육 여건과 교육 목표 그리고 구체적 사업 내용을 꼼꼼히 따져 보고 필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또한 학업적·비학업적 교육성과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가 환류되는 체계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상적인 교부금 산정방식으로 완전히 한 번에 이행하기 이전의 중간 단계로서 정부안은 반세기 넘도록 산식에 의해 결정되던 교부금에 익숙한 교육 공급자들

의 이해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판단합니다.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만을 반영하는 것은 단기적 인적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고려한 결과이기는 한데 학령인구가 앞으로 2035년까지 매우 빠르게 급감하고 그 이후에 소폭 반등은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2040년 초반 이후에 다시 감소하는 추어로 돌아서기 때문에 이런 정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서 교원 등 교육공무원과 최근 급증한 공무원직의 중장기 수급계획을 반드시 수립하고 그 큰 변화를 중장기 시계 속에서 담아내야만 효율적으로 교육재정에 활용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지금 교육 공급자들의 이해를 충분히 반영해서 새로운 산식을 제시한 정부안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교부금 보전 규정, 개정안 제4조는 매우 비대칭적이고 경직적인 조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조항은 새 산식으로부터 계산된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적을 경우 국가가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반대의 경우, 즉 산식 결과가 전년도보다 지나치게 많을 때 제한하는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하방은 국가가 보장을 하고 상방은 열려 있는 일방적인, 이른바 일방향 구조인 것입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명목GDP 성장률이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서 12.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GDP 디플레이터가 물가 요인을 대변하기는 하지만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에 의해서 수출물가 요인이 절대적으로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한국은행은 발표했습니다.

2분기 GDP 디플레이터 전년 동기 대비 21.9% 상승을 했습니다. 4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명목 GDP는 26.4% 늘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데 실질 GDP가 늘어난 것은 3.7%에 그쳤습니다. 또 물가 요인을 내수 요인과 수출 요인으로 구분을 해 보면 내수 요인은 3.6% 상승에 그쳤고 수출 디플레이터, 해외 요인은 56.6%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반도체 수출단가 상승에 기인한 교역조건 개선으로 발생한 급격한 수출 디플레이터 상승은 다시 말해서 교육재정 수요의 변화와 크게 연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2020년에 이례적으로 높은 명목 GDP 성장률이 28년 교부금 산정에 그대로 반영되고 이후 연도에 복리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4조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반대로 경제가 역성장하는 위기 상황, 국가적 위기 상황이 흔치는 않지만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시·도교육청은 전년도 수준의 교부금을 보장받아 다른 국가기관과는 다른 재정 여건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국가 구성원이 다 함께 위기를 분담해야 하는, 고통 분담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특정 기관만 여유로운 재정을 향유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비대칭 구조에 대한 보완 장치가 상징적으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도교육청은 기금을 쌓아두고 중앙정부의 재정 여력은 고갈되었던 코로나19 재정 위기 상황과 매우 유사한 비정상적인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례적 교역조건 개선에 기인한 GDP 증가율의 예상치가 발생한 해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로 그리고 실질 GDP 상승률을 합해서 사용하는 그런 대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고 역성장이나 코로나19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개정안 제4조의 적용을 유예하는 단서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안 부칙 3조가 정하는 2026년 기준금액 문제는 제가 추측했을 때는 2025년에 감

액결산이 한 2조 원 정도 발생할 것 같고요. 2026년에는 이미 1차 추경에 4.8조 원 정도를 증액을 했는데 연말까지 소폭 세수가 더 늘어서 추가 증액 조정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합쳐서 향후 정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그것을 다 고려한 하나의 숫자 75조 6901억 8400만 원으로 2026년 기준금액을 산정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 보니다만 이 부분은 기획예산처의 정확한 설명을 교육위원회에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정책 제언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산식 개편은 교부금 총량의 예측가능성을 내국 세수 연동 방식보다 훨씬 높였습니다. 안정적으로 계속 증가하게 되는데요. 2030년대 중후반까지 이어질 학령인구 급감에 대응하는 재정 효율화 장치는 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히 학령인구 변화율에는 35%라는 가중치만 반영되는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공급자 측의 입장이 상당히 반영된 정무적 타협안입니다. 여기에 4조의 보전 규정까지 더해지면 교부금 총액은 사실상 줄어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럴 구조가 아닙니다. 그 결과 개별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소규모 학교를 보다 적극적으로 통폐합하거나 규모의 경제를 추구할 재정적 요인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유초중등 교육재정이 중앙정부에 의해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시·도교육청의 재정 효율화를 요구할 요인도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 1명을 위해서 교사 5명, 직원 2명, 공무원 2명을 배치하며 연간 7.6억 원을 사용하다가 신입생이 없어서 폐교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효율화를 위해서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제가 진술서 말미에 첨부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제약상 이 정도로 발표를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미래 세대의 인적 자본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개선을 교육위원회에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정 김학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수경 학회장님 진술 부탁드립니다.

○진술인 남수경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는 강원대학교에서 교육재정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남수경입니다.

현재 유초중고, 특수학교의 표준교육비 산정 연구를 책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회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언의 출발점은 제가 하고 있는 표준교육비 연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교육비는 흔히 학생 1명당 경비로만 이해하기 쉽지만 학교 교육활동의 특성상 학생당 경비만이 아니라 학교당 경비, 학급당 경비가 결합된 다층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당 경비와 학급당 경비는 그에 비례해 줄지 않습니다. 이것이 학교 교육재정의 근본 특징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지점은 교부금 총액 산식에 학령인구 감소를 직전 3개년 평균으로 하면서 그것의 감소분의 35%만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학급당 비용이 기본구조를 이루는 학교 재정의 특성상 교육부가 매우 시의적절하게 이루어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중한 설계를 위해서 오늘 저는 몇 가지 보안 장치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교육재정을 영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전생애 걸친 재분배로 이루어지게 된 개편의 문제의식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반세기 넘게 유지해 온 내국세 연동 구조를 새로운 산식으로 전환하는 만큼 정부안의 취지가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되도록 보완 장치가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부금 감소 시 국가가 차액을 보전하도록 한 제4조 신설은 총액 하방을 지키는 안정 장치이고 교부금이 2030년까지 순증할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을 통해 재정을 생애 전 단계로 확대하는 방향 역시 시의적절합니다.

다만 정부안이 의미 있는 개정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제도 설계상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지점이 정교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부금 확보에 대한 체감 안정성을 유지하는 문제입니다. 그동안 시·도교육청은 내국세 20.79%라고 하는 법정 비율에 따라 자동 귀속되는 재원 위에서 교육활동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해 왔으나 개정안의 산식 방식에서는 전년도 총액을 기준으로 주어진 금액에 맞추어 살림살이를 조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재정 운용의 구조가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되는 금액이 비슷하더라도 전자가 자동으로 귀속되는 몫이라면 후자는 매년 확인받는 금액이라는 인식의 차이가 있고 이를 교육활동의 자율성과 예측가능성 측면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째, 물가상승분 반영을 통해 실질가치를 유지하는 문제입니다. 신설되는 보전 조항이 전년도 명목 총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인건비·시설운영비 등 물가·임금 연동 항목이 큰 학교 재정의 특성상 명목기준 보전만으로는 실질 재정 유지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이미 확정된 정산 권리의 취급을 신뢰보호원칙에 부합하게 조정하는 문제입니다. 부칙 제2조는 개정 규정을 2025년 교부금 차액 정산에까지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5년과 그 이전 연도는 이미 결산이 확정되어 정산 채권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미 형성된 권리관계에 새 산식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과의 조화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제안하는 방향은 개편의 취지가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자는 데 있습니다.

첫째, 보전 조항을 실질 보전의 관점에서 정교화하고 산식 방식에서도 자동 귀속에 준하는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체감 안정성 확보 장치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가치 보전이나 명목 GDP 변화율에 하한선을 두는 방식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향후 5년 정도의 교부금 전망치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공표하도록 하는 다년 재정계획 법정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학생 수와 무관하게 늘어나는 미래교육 수요를 별도의 장치로 함께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AI·디지털 전환이나 노후시설 개선 또 학교 신설, 특수교육 수요 이런 부분들은 학령인구 중심의 산식만으로는 온전히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개정안이 학령인구 감소율에 직전 3년 평균을 적용한 것은 학생 수 감소 속도를 완화하는 연착륙 기제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춰서 학생 수 완충과 미래 수요 보장은 별개의 장치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미래 수요는 총액 산식 밖의 미래교육전환 특별교부로 분리하여 뒷받침하되 중앙집권적 하향식 배분보다는 시도별 조

례에 기반한 미래교육기금으로 운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볼 수 있습니다. 국가는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시·도교육청은 조례 기반의 기금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미래교육투자를 수행하는 이원적 구조가 재원 안정성과 지역 자율성을 함께 살릴 수 있는 방향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번 패키지 법안에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교육세 40% 연간 약 1.4조 원을 추가 전입하는 것은 고등교육 투자 확대할 수 있게 되어서 이 점은 매우 환영할 만합니다. 다만 고등교육 재정 안정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이번 전입이 총 증액이 아니라 이전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함께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1.8조 원은 기존에 초중등으로 배정되는 교육세의 재배분에 해당하고 고등교육 재정 순증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공적 재원 비중은 OECD 평균에 아직 못 미치는 수준이고 그동안 등록금 등 민간 부담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전분에 더하여 실질적 확충 계획도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둘째, 특별회계의 한시성을 해소하고 고등교육 중장기 재정 확보 계획을 법률에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2030년 말까지 운영되는 한시 회계이므로 4년 뒤 존폐를 다시 논의해야 하는 재원 위에서 국가 고등교육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를 상설화하거나 최소한의 장기 연장을 법에 담보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고등교육법 제7조의2제2항의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고등교육 중장기 확보 계획도 명시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계정의 수입은 내국세 추세치에 20.79%를 적용한 교육의 몫에서 산식에 따른 교부금을 뺀 차액입니다.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교육이 사상 처음으로 세수 변동에 연동된 장기 적립 재원을 갖게 됐다는 데서 그 의미가 매우 큼니다. 그러나 위험 측면에서 보면 적립 규모가 세수에 따라 출렁이고 용도가 광범위하여 안정 재원이 아니라 잔여 재원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4가지 안전 장치를 제안합니다.

첫째, 최소 적립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둘째, 보전성 지출과 투자성 지출을 기능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시행령 또는 운영 지침 수준에서 보전 목적 지출과 투자 목적 지출을 회계상 구분하는 방식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번 패키지로 묶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와 영유아특별회계는 모두 교육위의 소관으로 심사되고 있으며 사학진흥기금 등 교육 목적 기금 역시 교육위 심사를 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교육·인재계정에 대한 교육위 심사는 우리 국회가 이미 확립해 온 원칙의 당연한 적용입니다. 더 나아가서 계정별 소관 상임위 심사는 우리 국회의 확립된 운영 원리이기도 합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여러 부처 사업을 한 회계에 담고도 부처별 소관 상임위가 나누어 심사해 온 국내 선례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84조의2제3항이 정한 의견 청취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넷째, 교육·인재계정의 재원이 각급 교육 분야에서 유의미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교육 전문가 참여 분과위원회의 실질적 작동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국회의 사후 심사만으로는 재원이 편성·집행 단계에서부터 교육정책의 전문성 아래에 놓이도록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기금운용구조 내부에 교육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 분과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결국 교육·인재계정의 편성·운용은 국회 상임위 심사와 운용 차원의 전문가 참여가 함께 작동할 때에만 실질화될 수 있고 이것이 재정 기동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재정 민주주의와 교육 전문성을 동시에 지키는 유일한 경로입니다.

저는 오늘 표준교육비 연구를 책임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교 현장의 재정이 흔들리면 교육의 질도 함께 흔들린다는 것은 실증연구와 국내외 사례를 통해서 확인한 바 있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그 확인 위에 서 있습니다.

그 경험에서 얻은 결론은 분명합니다. 교육재정의 안정성은 총액의 크기가 아니라 재원의 예측 가능성, 실질가치의 유지 그리고 제도적 보호장치의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조건들이 이번 개정 과정에서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지켜 내는 의미 있는 개정이 되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재정의 안정성 확보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며 확보된 재원이 실제로 아이들에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시도교육청 차원의 효율적 재원 사용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겁니다. 시도교육청 차원의 효율성 제고 노력이 함께 갖추어질 때 재분배의 방향성과 재정 안정성은 충돌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으며 재정민주주의와 교육 전문성이 동시에 지켜질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하고 의미 있는 심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정 남수경 학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기창 총장님 진술해 주십시오.

○진술인 송기창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대학원에 재직하고 있으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진술인으로 나온 것이 조금 의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대학의 입장을 대변하러 나왔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동안 지방교육재정을 연구해 온 학자로서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재정에 봉사한다는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교부금 관련 연구를 주 해 오면서 이번 교부금법 개정안을 평가한다면 크게 보면 교부금의 안정성을 강화했다는 나름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잘못된, 말하자면 부정적인 평가입니다마는 교부금의 규모를 앞으로 줄이는 시발점이 돼서 지방교육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교육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그동안 줄다리기해서 내놓은 법률안을 보면, 크게 보면 네 가지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국세 연동구조 대신에 국내 총생산액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했다는 점이 고요.

두 번째는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할 때 35%만 반영했다, 인건비 비중이 60% 정도

되는 입장에서 학령인구가 변한다 할지라도 인건비, 경직성 경비는 인정해 주는 차원에서 35%는 반영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교부금이 중요하고 학교 현장이 재정에 의해서 계속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부금의 보정 조항을 뒤서 전년도보다 교부금이 줄지 않도록 했다는 것도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교부금을 내국세 연동 대신에 GDP 변화율과 학령인구 변화율이 연동하다 보니 기준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이 71조 원 정도였는데 76조 원에 근접해서 추경예산 75조 6901억 원으로 기준연도 금액을 정했다는 것이 앞으로 교부금을 비교적, 당분간은 교부금의 상승 구조를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이 교부금법 개정안이 어떻게 흘러갈까 이걸 보려면 미래 명목 GDP 성장 가능성을 봐야 되는데, 사실 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이나 이런 걸 봐도 2년 후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처가 제시하시는 향후 5년간의 추정치는, 전망치는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과거의 추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과거의 추세가 정확하게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과거 추세를 미루어서 앞으로도 이런 방향, 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과거 추세를 봤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과거 추세를 봐서 몇 가지 특징이 보이는데요.

첫째, 전년도 교부금보다 당해연도 교부금이 감소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보정해야 하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GDP 성장률보다 학령인구 감소율이 작기 때문에, 그 갭이 가장 작은 데가 2022년인데 1.28%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김학수 박사님은 교부금법 개정안 4조가 문제라고 그랬는데 당분간은 4조가 문제가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준연도가 중요한데 기준연도를 혹시라도 바꾸면 나중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봤습니다마는 y절편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 변화의 양상은 똑같다. 그래서 기준연도를 2010년으로 했을 때보다는 y축으로 본다면 위로, 2018년도에 교부금이 많이 늘어났을 때의 기준으로 따져 보면 위로 올라갈 변화 양상은 똑같다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변화의 기울기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세 번째는 개정 교부금법에서 산출한 교부금 증가액이 인건비 증가액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2018년 이후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특히 학교에 있는 교육공무직들 인건비 상승이 많았고 또 교원 처우개선 쪽도 있었고, 또 지금 교육청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기간제 교원이 늘어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인건비 증가액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증가액을 충당하지 못하는 교부금 증가액이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교부금법 4조에서 규정한 교부금 보정 조항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교부금이 전년도 수준으로 확보된다 할지라도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면 학교로 취급되는 운영비나 시설비가 감축돼야 되는, 시설비와 운영비가 잠식되는 이런 구조가 발생하는 것은 결국 교육의 안정성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

니다.

네 번째는 개정 교부금법의 교부금 기울기가 인건비 기울기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도가 계속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인건비가 교부금 증가액을 추월할 가능성이 많은 구조가 보입니다.

다섯 번째는 교부금 기울기가 종전 교부금보다 작다는 문제입니다. 그 이야기는 앞으로 교부금이 종전보다는 많이 안 늘어날 것이다. 제가 여기 비유로 그렇게 써 놔습니다. 마는 그동안은 전도 유망한 사업가의 소득이었다면 이제는 봉급생활자의 소득으로 전락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봉급생활자의 소득도 소득이 늘어나고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인건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봉급생활자의 소득과 사업가의 소득의 차이는 안정적으로 확보된다는 차이는 있지만 봉급만 받아 가지고는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얘기지요, 집 사기도 어렵고 그래서 대출도 받아야 되고. 이런 민간 경제에서 일어나는 일과 똑같이 교육청에서도 앞으로는 현상 유지하는 데 급급할 거다.

그러면 현상 유지하면 그래도 좋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개혁과 변화가 필요할 때는 개혁과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돈이 없어서 개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하나는 교부금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중요하다면 교부금 보정 조항…… 아니지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성을 제고하는 효과는 아주 좋은데 예산의 원리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내국세 연동구조를 비판할 때 수요와 무관하게 교부금이 결정된다 이걸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국세 수입과 무관하게 교부금의 구조는 결정되게 돼 있지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교육계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원리상으로 비판을 한다면 비판하던 그 포인트를 결국은 해결하지 못한 채 내국세 연동구조만 깎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내국세 수입의 감소가 전망됨에도 일정한 수준의 교부금을 보장하는 것도 문제지만 내국세 수입의 증가가 전망됨에도 교부금만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도 문제다, 그 얘기는 이런 말씀입니다. 아까 고통 분담 차원에서 내국세가 줄어들었을 때 교부금도 줄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교부금이 많이 늘고 내국세가 많이 늘어서 국가의 모든 부문에서 경기 호황에 따른 여러 가지 투자 확대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만은 투자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교부금법 개정안에서 제안한 경상 GDP 성장률과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하는 것은 좋은데 경상 GDP 성장률 대신에 다른 모든 정부 부문의 예산과 마찬가지로 내국세 성장률을 반영해서 예산을 짜는 것이 예산 원리에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보정 장치를 두었습니다. 그런 보정 장치를 활용한다면 내국세에 연동하는…… 연동할 때 20.79로 연

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년도 교부금에 연동해서가 아니라 해당 연도의 내국세 성장률에 연동해서 교부금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교부금이 전년도 교부금보다 감소할 경우를 보전해 준다고 돼 있는데 과거 자료를 보니까 감소할 경우가 발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이 보정 조항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고, 원래 보정 조항을 둔 취지가 교육재정의 하방 그러니까 아래로 너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면 그런 원리에서 인건비와 인건비를 보장하면서 운영비와 시설비의 감소를 좀 방지하는 그런 장치, 즉 교부금 전년도 대비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것 대신에 인건비 증감액을, 인건비 증가액을 보장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교부금을 산정할 때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령인구 변화율을 지금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때 학령인구 변화율을 산정할 때 기준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 인구통계에는 외국인 학생 수가 제외됩니다. 그런데 2026년 교육 통계에 의하면 외국인 학생 수가 5만 8000여 명입니다. 그러면 5만 8000여 명은—그리고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이 학생은 변화율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령인구 변화율 대신에 학생 수 변화율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학생 수 변화율을 가져오면 어린이집 재원 학생 수가 빠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재원 학생 수를 포함시켜서 학생 수 변화율을 가져다가 우리가 학령인구 변화율 대신에 쓴다면 보다 더 정확하게 교부금을 산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정 송기창 총장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은영 집행위원장님 진술해 주십시오.

○진술인 전은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대응 긴급행동 집행위원장 전은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교육위원회 위원님!

저는 오늘 교육현장의 입장에서 교원·학생·학부모·노동·교육노동자 시민사회가 왜 이번 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한목소리로 우려를 제기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장의 요구는 단순히 교육예산을 더 달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반세기 넘게 유지해 온 교육재정의 기본 구조를 바꾸는 과정은 정당했는지, 학생 수 감소를 실제 교육비용 감소와 동일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결정이 학교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첫째, 과정입니다.

이번 개편은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합니다.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교육재정의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5년간 이어진 내국세 연동의 기본 틀을 바꾸면서 입법예고는 단 4일만에 그쳤고 규제영향분석서도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장기 재정추계와 17개 시·도별 영향을 먼저 공개하고 교육 주체와 충분히 논의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 발표 전 실질적인 협의는 없었습니다. 이는 교육 주체를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한 것입니다.

미래대응기금으로 전환되는 재원이 시·도교육청에 법적으로, 안정적으로 배분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재정결정권은 커지고 지역의 교육 수요에 따라 재정을 계

획·집행할 지역 교육청의 자율성은 약화되기 때문에 지방분권과 교육자치의 방향에도 역행합니다.

둘째, 학생 수 감소를 교육비의 감소로 연결하는 개편 논리도 실제 교육비용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16년부터 25년까지 초중고 학생 수는 약 14.6%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학교 수는 308교 늘었고 학급 수는 0.2%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에 따르면 기준재정수요액 가운데 학생 수를 직접 측정 단위로 사용하는 항목은 8.8%에 불과합니다. 학생 한 명이 줄었다고 교실 한 칸, 교사 한 명, 급식실 하나를 같은 비율로 줄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비에는 학교와 학급, 교직원과 시설을 유지하는 경직성 비용이 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기초학력, 이주배경학생 교육, 학생 정서 위기, 돌봄, 급식처럼 학생 수와 다른 방향으로 증가하는 수요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안은 전국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교육재정 총액에 일률적으로 반영합니다. 왜 35%인지, 그 비율이 실제 교육비 감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산정액이 전년도보다 낮으면 차액을 보전하기 때문에 교육재정이 안정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전년도 총액 보전은 명목상 감액을 막는 장치일 뿐 물가와 인건비, 공사비가 오르면 전년도와 같은 금액을 받아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재정은 줄어듭니다. 또한 개정안은 개정안에 따른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1원이라도 증가하면 보전 조항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현재 내국세 연동제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보다 크게 적더라도 전년도보다 줄지만 않으면 보전 대상은 아닙니다.

아울러 오늘 진술을 위해 제출된 원고 진술문에서도 부칙 제3조가 최초 기준액을 약 75조 6902억 원으로 정했지만 그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금액은 2026년 추경을 반영한 교부금 총액인 약 76조 4000억과도 다릅니다. 정부는 3년 평균의 계산 과정과 교육세분 제외 및 정산분 반영 내역을 공개하고 교육세분까지 최초 기준액에 온전히 반영해야 합니다.

인구 전망 역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공개로 확인한 정부 추계에 따르면 3세부터 17세까지 학령인구 변화율은 37년에도 마이너스고 2040년에야 증가로 나타납니다. 이를 30년대 중후반부터 증가한다고 전제하며 재정과 인력의 감축을 서두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교육재정의 기준을 바꾸면서 핵심 산출 근거조차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은 그 절차와 내용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제입니다.

안정적으로 적게 주는 것이 교육재정의 안정성은 아닙니다. 교육재정의 안정성은 숫자가 전년도보다 줄었는지가 아니라 현재 그리고 앞으로 학교가 맡은 교육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결산도 이를 보여 줍니다. 서울교육청 25년 세출 약 11조 9000억 원 가운데 인건비, 학교재정지원, 보건급식, 복지, 학교시설개선 등 필수 다섯 분야 지출이 90.2%입니다. 교육재정의 대부분이 학생 수에 따라 바로 줄일 수 없는 필수 지출이라는 의미입니다.

셋째, 숫자 뒤에 있는 학교와 아이들의 현실을 봐야 합니다.

2025년 자살로 사망한 초중고 학생은 244명입니다. 하루에 1명 내지 2명꼴로 자살한다는 얘기입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관심군 학생은 6만 8000여 명인데 전문 상담교

사가 배치된 학교 42.5%, 절반이 안 됩니다.

현재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현실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은 6학년보다 인구 규모가 더 작은 세대입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동네를 한참 돌아다녀도 또래를 만나기 어려운, 이전보다 외로운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적은 수의 아이들이 장차 더 많은 고령인구와 부모 세대를 모두 부양하며 세대 간 연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함부로 재단할 수 없는 평균 수치와 돈 얘기만 합니다.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질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어떤 적정 교육과 관계를 경험하면서 성장해야 하는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정부안에는 이러한 세대적 고민과 철학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2015년 8만 이상에서 2025년 12만으로 증가했고 이주배경학생, 21만 명 넘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교사와 지원 인력, 상담, 치료, 학습지원 비용은 학생 수가 줄어도 같은 비율로 줄지 않습니다.

지역별 교육 수요도 서로 다릅니다. 지난 10년간 작은 학교는 약 1000개교 늘어서 전체 학교의 31.3%가 됐지만 전국 중학교 학급 3개 중 하나는 아직도 28명 이상 과밀학급입니다. 수도권에서는 학급과 학교를 더 만들어야 되고 지역에서는 학생이 적더라도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 학교와 학급을 유지해야 합니다. 학교가 사라지면 그 지역은 퇴화합니다. 지속 가능성과 균형 발전도 무너집니다. 전국 평균 학생 수만으로는 이처럼 상반된 교육 수요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급식 현장 인력난도 심각합니다. 서울에 1000명 넘는 중학교에서 조리실무사 두 분이 학생의 급식을 준비해야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폐암 위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국가가 급식안전기준을 강화했다면 그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도 함께 보장해야 합니다.

이제 국회가 바로잡아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교육의 기본적인 사항을 국회가 직접 입법절차를 거쳐 정해야 한다고 밝혔고 국회입법조사처도 이번 산정방식 변경을 의회의 유보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 일정이 국회의 판단을 촉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공청회 한 차례로 충분한 숙의를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국회는 현행법과 정부안을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한 중장기 재정추계와 17개 시·도별 영향을 확인하고 실제 교육 수요를 기준으로 필요한 재정 규모를 다시 검증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 교원, 교육 노동자,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 주체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정부안을 그대로 의결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교육재정의 연동 원칙을 유지하면서 정부 개정안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교육재정 논의는 얼마를 줄일 수 있는가가 아니라 국가가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여유 재정이 아니라 국가가 아직 채우지 못한 교육의 책임입니다.

국회와 교육위원회가 아이들의 교육권과 국가의 책임을 지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전은영 집행위원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먼저 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훈 위원** 정성국 위원님하고 순서를 좀 바꿨는데요.

교육부차관님, 지금 이 제도를 바꾸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기재부와 굉장히 치열하게 협의를 했고……

○**박정훈 위원** 치열하다는 뜻은 반대한다는 취지인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아닙니다. 합의안입니다. 협의 과정에서 치열하게 협의를 했고요. 지금 정부안에 대해서……

○**박정훈 위원** 정부가 지금 기획예산처 주도로 추진하는 이 변경에 대해서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장관님 말씀 들어 보니까 조금 반대의견을 갖고 계시던데 차관님하고 생각이 다른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 합의안을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합의안입니다.

○**박정훈 위원** 그러면 합의안이 통과되기를 바라십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국회에서 필요한 부분은 조금 더 보완해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박정훈 위원** 정부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50년가량 지속되어 온 제도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생각들이 다르실 거라고 봅니다. 그게 당연한 거고요. 건전한 논의를 통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은 제도가 진화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 시기에 이 개편안을 가지고 온 의도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의도 때문에 여러 가지 반대의견을 내고 있는 건데……

지금 이게 교육청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결국에는 정부가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어서 여기서 일부는 역시 교육재정을 위해서 쓰겠다는 건데 아시는 것처럼……

차관님, 아시다시피 이 기금으로 가게 되면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 한 20~30% 되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기금도 국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훈 위원** 심의는 거치지만 사전동의 없이, 그러니까 쓰고 나서 보고해도 되는 돈 아닙니까? 국가재정법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70조에 보면.

혹시 보셨습니까, 관련 법?

○**교육부차관 최은옥** 제가 알기로는 편성할 때부터 국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훈 위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이—70조입니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 말만 믿지 마시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육청에서 쓸 수 있는 돈을 이재명 정부에 딱지를 붙여서 쓰겠다, 그래서 정부가 생색을 내겠다 이런 의도로도 들립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교육 현장에

서 오죽 알아서 돈을 잘 배분해서 썼겠어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님, 지금 정부의 생각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건히는데 일정 비율, 20.79%를 일률적으로 건어 오니까 돈이 남아돌아서 쓸 데 없으니까, 학령인구까지 줄어드니까 결국에는 돈을 정부가 좀 뺏어 가서 나눠 주겠다 이런 취지인데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보시기에 학령인구가 떨어지면서 돈이 많이 남아돌습니까?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교육·인재계정과 관련된 문제 중에 유아교육비를 더 투자하겠다는, 그다음에 고등교육 예산을 더 투자하겠다는, 그다음에 평생교육을 더 강화하겠다는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그 방향이 옳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중에 교육청에서 이미 집행하고 있는 부분, 유아교육 부분에 이미 유치원 부분은 들어와 있고요 ‘유보통합은 곧 모든 재정이 교육청 관할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 돈을 뺏아서 유아교육에 투자한다고, 지금 누구를 통해서 그것을 집행한다는 말이야’ 이런 의문이 생기지요.

○박정훈 위원 그게 상식적인 의문이지요.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예, 평생교육도 비슷하고요. 고등교육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AI시대에 교육청에서 독자적으로 AI 무슨, 뭘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대학과 연계 사업을 계속 강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고등교육 예산의 경우에도 교육청을 통해서 일부 충분히 증액할 수 있는데 왜 그런 경로를 취하지 않지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지요.

○박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항상 부족하고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 가지 예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도체가 워낙 호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런 논의가 시작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박근혜 정부 때 1년 예산이 400조였는데 내년 예산이 820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물론 우리 국가경제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예산도 늘어나야 하지만 이게 민주당 정부 때 과도하게 예산이 늘어나면서 사실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의 호황으로 세수가 더 건히다면 돈을 갚는 데, 빚을 갚는 데도 돈을 좀 써야 되는데 이렇게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것을 만들고 또 교육재정교부금까지 건드려 가지고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가 정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들을 이런 데서 충당하는 게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심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더 그런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데 아까 전은영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줄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정부안이 너무 빨리 나오고 이렇게 공청회나 이런 것들도, 이해당사자들이 충분히 모여서 논의를 더 할 수 있는, 여러 차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전은영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크신 거지요? 말씀해 보세요.

○진솔인 전은영 예, 그렇습니다.

○박정훈 위원 우리가 국가교육의 대계를 혼드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마음이 급하더라도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초과세수를 이런 식으로 미래대응기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권 생색내기용 기금으로 쓰지 말고, 더군다나 국회의 올바른 통제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이것을 쓰려는 발상 자체가 저는 위

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좀 더 충분히 논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토론 자리를 자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정 박정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남수경 학회장님, 아까 발표 너무 잘 들었는데요. 이 분야의, 오랫동안 교육재정 연구하신 전문가, 권위자이시지요.

현재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율, 변화율의 35%를 교부금 산정에다가 반영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룰테면 인건비의 지출 고정 비율이 한 60% 정도 되니까 나머지 40%가량을 학령인구 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연동해야 된다 하니까 처음에 40%를 얘기했다가 지금 35%까지 줄인 건데요. 아까 타당한 근거 설명을 하셨는데 조금 더 얘기해 주시지요, 이것이 타당한 근거인지요. 학령인구 변화율의 0.35로 잡은 것.

○진술인 남수경 표준교육비 연구를 하면 결과는 학교당 경비, 학급당 경비, 학생당 경비, 그러니까 학생 수 감소와 연동된 부분들에 대한 퍼센트가 산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비용으로 보면 학교에 가는 비용이 100을 기준으로 보면 한 45% 정도고 총 표준교육비 금액에서……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0.35가 줄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진술인 남수경 0.35보다는 한 0.3 정도로 주는 게 타당하기는 합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0.35도 지금 많은 것이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룰테면 인건비 지출하는 것 다 빼고도 고정경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룰테면 시설비라든지 유지보수비라든지 안전관리비, 그런 경직적인 예산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활동 수요가 학생 숫자하고 정비례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0.3을 얘기하지만 어떤 연구들은 8.8%를 얘기하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아까 김학수 연구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0.40도 많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줄이는 것이, 아까도 전은영 집행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학생 수 주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표준으로 삼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초학력 보장해야 되지요, 교육격차 해소해야 되지요, 이주배경 학생 수 매년 늘어나고 있지요, 그리고 특수교육 학생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돌봄도 해야 되고 친환경 무상급식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학령인구하고는 무관하게 늘어나는 교육수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0.35로 줄인 것도 너무 많아요. 이 비율을 좀 줄여야 이런 부분들을 다 커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인 남수경 표준교육비 비율은 한 30% 정도 있고……

○강경숙 위원 예, 아까 말씀하신 거니까요.

○진술인 남수경 의무교육 지출 비용은 한 60% 정도기 때문에 40과 30 사이의 35%가 결정된 부분이라서 그 정도에 근거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그런 미래교육 관련돼 있는 고정적 경비를 생각하면 더 낮추는 것이 타당하

지요.

○강경숙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K-교육, 여러 가지 K-푸드나 K-웨이브 많이 말하지만 이렇게 AI 교육도 있고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이 많습니까? 아까 김학수 연구원님 소규모 학교도 얘기하지만 소규모 학교 줄어 버리면 그러면 그 지역이 남아나겠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제가 질문하지 않았습니니다.

차관님, 2027년도 예산안의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지출 항목을 약 5조 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서 초·중등교육에 1원이라도 편성된 게 있나요, 없나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강경숙 위원 없습니다. 교육·인재계정에 영유아, 고등·평생교육은 있지만 초·중등이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주머니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가도, 미래대응으로 간다 하더라도 초·중등에도 쓸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건 담보해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적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국세 연동 20.79%를 깨더라도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줄어들면 차액을 보전한다는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에 안정성을 확보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현행 교부금법에도 교부율을 보정할 수 있는 조항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아까 송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항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법안 조항이 까다로워서 사문화된 것일 수는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살려 낸다고 하면, 이 법안 조항이 까다로웠을 때 그것을 다시 살려낸다고 하면 지금처럼 교부율 보정 조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 최근에 하려고 하는 그런 교부금의 안정성을 위해서 한다는 보정률 그것들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기존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기창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가 교육재정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부안대로 교부금이 개편되는 경우에. 그런데 인건비 상승은 계속 가파르게 이어 가고 교직원 인건비를 총장님 자료에 보니까 25년도에 비해서 26년에 인건비가 2조 4023억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교부금 개편의 이유가 이런 안정성의 문제라면 이미 있는 그런 교부율 보정 조항을 실효성 있게 쓰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국세 연동률을 굳이 깨야 될 이유가 이것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은영 집행위원장님, 아까 말씀 굉장히 잘 들었는데요.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지요? 그러면 학부모 입장에서 대표성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공청회가 열리기 전에 교육부, 기획예산처, 다른 정부기관에서 여론수렴을 하겠다는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진술인 전은영 없습니다.

○강경숙 위원 없습니다. 의견을 내라고 요청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네요.

위원장님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의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한데요. 이걸 보니까 한 400여 개 단체가 모인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굉장히 상충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국세 연동률 20.79를 깨는 것에 대해서 다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유례가 없고 교육계에서 이런 적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많은 단체가 모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없이 다 모여서 그러한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맞습니까?

○진술인 전은영 예, 맞습니다. 진영 없이 모여 계십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실제로 기획예산처로부터 자료를 보니까 8월 21일에 개편 방안을 발표하기 전에 7월 8일 하고 7월 10일 시도교육감회의가 있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수렴 절차가 없었는데, 그러면 현재 지역이나 현장의 상황이 어떤지를 조금 더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실 여기 지금 교육감님들이 나오셨는데 울산에서 나오신 조용식 교육감님 말씀도 좀 듣고 싶거든요. 현재 교육 상황이 어떠신지 현장 이야기를 들려 주시는데요,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전은영 집행위원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용식 교육감님 교육 현장 상황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들려 주십시오.

○**진술인 전은영** 사실은 국회 앞에 370여 개 단체가 농성장을 펼쳐서 지키고 계십니다. 사실 기대하고 믿었던 만큼 현장의 실망과 소외감은 큼니다. 저는 진보·보수를 떠나서 당선자가 되면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국민 모두의 공직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부이건 어떤 공직자건 국민의 안녕한 삶을 위해서는 그 공직, 정책 수행들이 안정적이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진영 없이. 그래서 현 정부에도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정운영계획에서도 유·초·중·고 정책 없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교육재정 개편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진보·보수 할 것 없이, 진영 없이, 이해관계 없이, 공무원노조도 들어와 계십니다. 상임대표 단체들을 보시면 한국교직원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조연맹, 진영 없이 모여 계십니다. 교육공무직,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부모, 학생, 시민단체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런 연대체는 저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이 단체들 뒤에는 교원 약 50만 6000명, 교육행정 지방공무원 7만 8000명, 교육공무직만 약 17만 명 있습니다. 학생 555만 명까지 더하면 교육주체만 약 630만입니다.

저는 간혹 어떤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다가도 사람을 잃을 것 같은 순간이 오면 목적을 늦추라고 조언을 하는 편입니다. 이 사람들 다 잃고 어떤 힘으로 앞으로 남은 국정을 운영하실지 저는 위기감이 상당히 큼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 조용식** 울산광역시교육감 조용식입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 개편 전후 산식에 따라서 계산, 추계를 해 보니까 7500억 정도가 줄어듭니다. 울산 교육재정 규모가 2조 5000억임을 감안하면 매우 큰 금액입니다.

울산에 40년 이상 된 학교가 74개교가 있습니다. 이 74개교를 돈이 있다고 해서 물론 한꺼번에 다 고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해도 울산에 여러 개 건준다면 한 7개교 정도를 개축해 나갈 텐데 이렇게만 해도 25년이 넘게 걸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어서 이런 노후된 교육환경이 그간 돈이 없어서 못 했다는 얘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학교 현장에는 학생 교육에 함께 참여하는 교사와 비정규직이라고 불리는 노동자들이 계십니다. 특히 급식노동자들 같은 경우 울산만 해도, 이분들이 365일 상시근로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어서 평균 한 두 달 정도는 임금이 없이 생활하시는 분입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구나다 365일 근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취임하면서 이분들을 전원 상시직으로 전환하려고 추계를 해 보니까 급식노동자만 한 100억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100억 원 정도면 많지 않은 돈 같지만 울산의 올해 전체 예산 중에서 경직성 경비 84% 정도를 빼고 거기다가 노후개선비라든가 실질적으로 교육감 재량사업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한 500억 남짓 됩니다. 만약에 이분들을 전환하게 된다면 그중에서 100억 원이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이분들을 365일 근무도 시키지 못하면서 교육활동에 동원시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세수가 이럴 때 오히려 교육환경 개선이라든가 그간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해 왔던 부분들을 좀 정리해 주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은영 위원님 발표하실 때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학령인구, 학생 수가 줄었지만 실제로 그 학생들이 커서 확대된 노인 인구라든가 이주민이라든가 이런 많은, 대한민국에 실질적으로 부양해야 될 사회적 부양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이 학생들을 예전과 같게 가르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많은 학생 가운데서 일부 잘하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교육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 한 명 한 명을 소중한 재원으로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재정교부금 문제를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정 질의시간 초과해서 교육감님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충분히 시간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영 위원 개혁신당 이주영입니다.

차관님, 제가 이번 논의를 계속 폴로업을 하면서 좀 답답했던 부분이, 이 과정에 대해서 찬성하는 정부 측 입장이 있을 것이고 우려하는 교육계 측 입장이 있으실 텐데 양쪽 다 잘 설득이 안 됐어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양쪽 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재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장기 전망이 없었고 또 정부 측에서도 어느 부분이 방만하다거나 혹은 국가가 직접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는 설득의 구체성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아마도 지금 정부 측 입장을 뒷받침하는 쪽에 가깝다고 보는데, 지금 교원당 학생 수와 직원당 학생 수에 대한 중장기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나왔고요. 그런데 이 얘기는 아직 장기교육계획이나 장기교원계획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산식까지 도출이 되는 게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명목 GDP 3년 평균 증가율, 역성장하는 국가 경제 위기 시에는 모든 구성원이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도 감소 가능성을 열어 놔야 된다는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만약에 이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면 사실 그냥 기존의 세수 연동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많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좀 여유 있게, 우리가 기존에 못 썼지만 반드시 써야 하는 교육 영역에 돈을 좀 더 주고요. 그리고 어려울 때는 함께 또 전체 재정이 줄 때는 좀 줄 수 있는 대단히 합리적인 방식이었다고 저는 보

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부터 대한민국이 어떻게 성장을 했습니까?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아무리 국가가 어려워도 교육에는 적어도 이만큼 할애를 하자는 게 이 교부금의 취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두 번째는, 이것은 좀 더 큰 우려입니다. 여기 보면 공교육 규모의 경제를 훼손하는 소규모 학교의 유지비용을 지역에서 더 많이 부담하도록 하여 통폐합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재정적 유인을 부여하자고 하셨어요. 여기에 써 있습니다.

이것은 차관님의 의견을 여쭙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 측의 이런 부분들을 찬성하고 동의하고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작은 학교일수록 오히려 지방의 취약한 지역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는 지금 서울·대구·울산 교육감님들이 나와 계시는데, 물론 이 지역에도 소외된 소규모 학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시군구 단위, 읍면동 단위에 위치하고 있는 여기보다 더 작은 규모의 학교에는 생각보다 오히려 과격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공청회를 듣다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차관님 의견이 좀 궁금하고요. 시간관계상 제가 먼저 질문을 하고 한꺼번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수 감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직성 비용이 있고 또 그 외의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수요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아이들의 발달이라든가 아이들의 출생에 대해서 꽤 깊게, 길게 관여를 해서 데이터를 잘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줄었지만 미숙아는 비율상 훨씬 더 많이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발달장애아동이라든가 장애아동의 경우에도 실제로 수가 늘고 있고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 학대아동의 경우에도 데이터를 보면 전체 동 나이대의 학령인구가 주는데 학대아동의 수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될 정도로……

학생수의 감소라는 것이 하나의 지표로 사용되기에는 오히려 그것은 첫 번째는 교육의 특수성을 차관님께서 혹은 정부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의 교육을 앞으로도 그대로 할 것이라는 전제가 혹시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간단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당 학생수 문제는 사실 교육에 대한 투자계획이나 전체적으로 만들 때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과거에 학생수를 35명으로 한다 이런 계획들이 한 20여 년 전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은 통상적으로 한 28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 표준적인 게 몇 명일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굉장히 치열하게 논의해서 합의를 거쳐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국가교육위원회하고도 협의를 거쳐서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교부금 개편의 취지는 저희가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정적으로, 초중고에는 확정적으로 돼 있었는데 그 이외에 그 이전 단계나 이후 단계는 투자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교육 투자를 늘리는 게 좋겠다라는 방향이 있는 거고요.

○이주영 위원 차관님 중간에서 죄송한데, 그런데 그게 지금 미래대응기금으로 해서 정부가 직접 집행하는 방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육부에서 사실 교육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정확한 곳에 집행하는 것이 저는 아이들에게 가장 잘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이 대단히 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9조 2항에서 보면 3호에서도 국가인재 유출 방지 등 인재육성 사업이라든가 5호에도 보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인재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교육부에서 정확하게 학생들에게 도달하기 위한 정책보다는 국가에서 사실상 좋게 말하면 전반적인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이것은 대표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차관님 또 장관님이시라면 기본적으로는 교육적인 목적에 훨씬 더 힘을 실어 주시는 것이 맞지 정부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해서 현장이 이 정도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 산식을 먼저 정하고 캡을 먼저 씌우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앞서 장관님과도 얘기를 나눴지만 교육부에 대한 신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미래대응기금에 열거돼 있는 그런 항목들은 사실은 쓰일 곳의 용처를 가능성을 열어 둔 거고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는 기금운용심의회를 앞으로 마련을 해서, 거기에 전문가도 포함해서 논의를 해서 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저희가 고려를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정 이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수 위원 순천갑 김문수 위원입니다.

우선 표를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교육예산을 보면 영유아 관련된 예산이 9조 그다음에 초중등이 78조, 고등교육이 18조, 평생직업교육이 1조 이렇잖아요. 그리고 영유아 기간이 보통 한 5년 그리고 초중등이 초중고 하면 12년 그다음에 고등교육이 대학 4년 그다음에 평생교육이 나머지, 100세 시대라고 하면 한 80년 되겠지요. 물론 이것을 연도별로 단순화시키면 사실은 초중고 12년간의 78조가 우리 인생에서 제일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다른 고등교육이나 영유아, 특히 평생교육 약 80여 년간 살아갈 때 국가로부터 교육 혜택을 재정적으로 보면 거의 받지 못하고 있지요.

그래서 전 인생에 걸쳐서 그 기간별로 정말 이제 좀 교육재정이 균등하게 쓰여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한,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초중고 교육은 재정교부금 내국세의 20.79%를 다른 분야에 비해서 의무적으로 연동제로 가져가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불만들이 그동안에 많이 쌓이고 이런 것에 대한 구조조정을 한 번 정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 같거든요.

울산교육감님, 혹시 이런 주장이나 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울산광역시교육감 조용식 그런 주장에 일부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

재 학교교육에서 학생교육 중심으로 다뤄 왔다면 이제는 학교교육과 공교육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른바 평생교육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교육자치 그다음에 지자체가 함께 협력해서 지역을 우리 학교를 거점으로 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학교시설 개방 그다음에 복합화 사업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지원하고 여기에 투자를 해서 이런 목표들을 달성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교육재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처럼 줄어들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면, 계속 주장된 내용들이 학령인구가 이렇게 줄고 있는데 교육재정은 간혹 이렇게 줄어드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아실 테고요.

그리고 아까 소규모 학교, 농촌지역도 소규모 학교를 보전해야 사실은 지역이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또 현실을 보면 학생 10명에 선생님 5명, 6명 이렇게 해서 1년 들어가는 예산이 7억 이렇게 유지비가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이 필요한 한데 이것을 초중학교 합쳐서…… 2개 학교를 따로따로, 저희 시골 면에도 보니까 초등학생 10명, 중학생 10명인데 두 학교가 동시에 유지되고 있어요. 저는 어쨌든 유지되어야 된다고 보지만 또 한편으로 다른 쪽에서 보면 너무 이게 방만하게 그냥 방치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것 효율화를 좀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구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구광역시교육감 강은희** 저희 교육청은 실제로 군위가 통폐합되면서 학교 통폐합을 단행했습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고 그리고 당분간은 교육재정의 수요가 긴급하게 더 투입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장기간 유지하는 데도 지금의 교육예산 산정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저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22년에 초과 세수된 부분이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고 그 기금을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시도교육청은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런 통폐합이나 또 더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한 재정의 여력은 지금의 개편안으로는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시도교육청에서 이러한 내용을, 개편을 능동적으로 할 예산 여력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했던 것, 소규모 학교들이 대구에는 없나요?

○**대구광역시교육감 강은희** 저희도 군위에 편입할 때 14개 학교에 860명이었는데 3개 학교로 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투입된 예산이 400억이 넘었습니다.

○**김문수 위원** 통합하는데 예산이 더 들어가요?

○**대구광역시교육감 강은희** 예, 학교를 구조조정하고 통학버스 노선을 개편해야 되고 그리고 병설이었던 학교를 단설로 하면서 통합하는 과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김문수 위원**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비용이 줄어야 통합의 의미가 있지 않나요?

○**대구광역시교육감 강은희** 예, 장기로 봤을 때 그 장기가…… 지금 시도 간에도 이런 통합이 이루어지는데 장기라는 게 최소 10년 정도 이루어져야 이게 완벽하게 진행되는, 그 상황에는 재정이 더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문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이렇게 개편을 해도 어쨌든 27년에 78조, 28년 84조, 29년 90조, 30년 92조. 개편을 해도 늘어나잖아요, 이게.

○**대구광역시교육감 강은희** 지금 우상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고 보시는데 그 사이에는 물가상승률과 그리고 여러 가지 미래교육 재정 그리고 시도교육청에 보면 교육사업은 일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김문수 위원** 시간이 없어서……

○**대구광역시교육감 강은희** 한 번 편성된 사업은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김문수 위원** 어쨌든 지금 개편을 해도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또 왜곡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교육계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사실은 다른 부처,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내년도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정말 하루하루 영업하듯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쫓아다니고 찾아다니면서, 정치인도 찾아다니고 또 기재부 찾아다니고 국민들한테도 호소하고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교육계통에는 너무 이것 20.79, 가만히 있어도 돈이 오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것을 제가 서울시의원 할 때부터 너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거 때는 파란색, 빨간색 엄청 찾다가 갑자기 선거 끝나면 그다음부터 정치중립을 선언하면서 학교도 못 오게 해요. 저는 이러한 태도들이 결국 이런 위기가 왔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무튼 교육계도 그런 것 반성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정**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혁 위원** 반갑습니다.

교육감님들 많이 서운하시지요? 솔직히 그러시지요, 뭐.

정근식 교육감님께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님이시지요?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예, 그렇습니다.

○**김준혁 위원** 이번 기획예산처하고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서 짧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이번 교육 개편안은 안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점수를 주는데 그 안정성은 3년 평균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내국세를 바로 전에 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내국세 3년 평균을 한다 그러면 안정성은 똑같이 확보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현재 산식은 경상성장률보다 교부금은 항상 적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마이너스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학생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교육교부금은 항상, 적어도 상당 기간 동안 경상성장률보다 적게 편성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확립하는 안이 이번 정부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꿈을 상실한, 대한민국이 세계의 교육 선도국으로 성장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꺾어 버리는 개편안이다. 어디에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 있는가……

○**김준혁 위원** 잠깐만요. 아니, 너무 격하신 표현일 수도 있고.

그러면 거꾸로 여쭙볼게요.

돈 제대로 주면 그러면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시키고 사교육 없애고 교육환경 개선하고 그리고 학생들의 세계적인 질, 수준을 높일 자신이 있습니까?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자신이 있습니다.

○**김준혁 위원** 에이 지금까지 그렇게 못 해 왔는데……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핵심 포인트는 우리가 오늘 이 논쟁이……

○**김준혁 위원** 교육감님, 제가 교육감이 도와 드리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알겠습니다.

○**김준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꿈을 상실하는 정책이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 교육을 망가트리려고 지금 이렇게 개편안을 하는 겁니까?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그렇지 않지요.

○**김준혁 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면 말씀도 그렇게 하지 마셔야지요. 아니, 서로 호의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없지요.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아니, 그래서 국회가 좀 더 신중하게 해서 그러한 것을 회북해 달라 이런 애기지요.

○**김준혁 위원** 그래서 지금 신중하게 하려고 먼저 의미 있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제 의도는, 저는 대학교수 시절에 정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좀 흔들어서 대학에 더 많은 돈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제가 교육위원으로 지역에 있는 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학교 교육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교부금을 제대로 교육환경 개선에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조용식 교육감님 이야기할 때 굉장히 공감도 많이 가고 제 생각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 질의를 교육환경 개선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약간, 정부 정책이 어쨌든 이대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진행은 되지만 최대한 이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남은 4년 동안 교육환경 개선을 하는 혁명적 교육 정부로 나는 평가받기를 받는 측면에서 차관님이나 여러 질의를 하려고 했어요.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저도 그 문제는 100% 동의합니다.

○**김준혁 위원** 그러면 제가 정근식 교육감님하고 이제 대화를 안 할 거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아니, 그러지마요. 그러면 안 돼요.

○**김준혁 위원** 아니, 교육감님은 처음에 너무 큰 실수를 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아니, 그렇지 않아요.

○**김준혁 위원** 아닙니다. 교육감님, 말 한마디가 천냥 빚 갚는다고 어쨌든 예들려 표현할 수 있는 말을 그렇게 우리가 꿈을 상실하는 정부로 만들었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고.

차관님, 2026년 대한민국 1인당 GDP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김준혁 위원** 2026년 현재 3만 9000달러가 좀 넘습니다.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 1980년에 1인당 GDP가 1680달러예요. 제가 다녔던 그 중학교가 지금 그대로 있는데 교육환경이 개선이 안 됐습니다. 물론 내부의 세시는 바뀌었겠고 급식실은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교육환경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있는 학교 중에 인조잔디가 깔린 학교가 대략 몇 퍼센트가 있는지 보고받으셨습니까? 17.5%입니다. 대략 학교가 1만 개가 넘을 때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인 대한민국이, 1인당 GDP가 3만 9000달러, 내년 되면 4만 달러 될 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1600달러 수준의 시대하고 지금하고 달라지지 않았다.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김준혁 위원** 그래서 저는 미래대응기금 이것 신설해서 지방교육청에 줄 돈 다 주고 남은 돈으로 최소 10조 정도를 해서 바로 연차, 3년차 순으로 해서 전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학교의 운동장 다 개선하고 국민들이 함께 쓸 수 있게 하고 급식실 개선하고 체육관 새로 만들고 거기에 몇 곳 학교마다 수영장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강복 국장님 잠깐 일어나 보십시오.

학교에 인조잔디를 깔게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어떤 일이 조금 더 흥미롭게 혹은 학교의 교육이 어떻게 변화 발전할 수 있습니까?

○**교육부교원교육자치지원관 이강복** 학교에 따라서 인조잔디의 활용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학생들한테 좀 더 친숙한 활동으로 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준혁 위원** 여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나온다 이것 되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부교원교육자치지원관 이강복** 예.

○**김준혁 위원** 지금 여학생들이 운동장에 나와서 운동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조잔디 운동장이 있는 학교의 여학생들이 나와서 엄청나게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자라나는 청소년기에 학생들의 건강 상태도 달라지고 정신건강도 달라집니다. 지금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해 하고 있고 그래서 우울증 걸리는 학생들도 많고 상담교사가 더욱더 많이 필요한데 그런데 교육환경이 개선되게 되면 전혀 다른 시대가 올 수 있어요. 교육부는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하고 함께해서 저는 교육부에서 내려보낼 돈 내려보내고 안정되게 교육환경, 지금과 같은 양은 내려보내고 나머지 돈으로다가 초과 국세 중에 미래대응기금에서 최소 10조 정도를 3년 동안, 4년 동안 교육환경 개선에 전체를 다 써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교부금 개편안에 대해서 많은 교육계의 인사들과 그리고 학부모들, 학생들도 받아들

일 수 있다. 저는 이 점을 정말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정 김준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범수 위원 서범수 위원입니다.

김학수 위원님은 이 개편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 입장이지요?

○진술인 김학수 예,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핵심으로, 왜 찬성을 하는가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핵심만.

○진술인 김학수 일단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늘어납니다.

○서범수 위원 늘어난다고 보셔서 찬성을 한다.

남수경 회장님, 조건부 수용입니까?

○진술인 남수경 예,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핵심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진술인 남수경 학령인구 변화와 경제성장과 관련되어 있는 산식은 내국세에 그냥 연동된 방식보다는 저는 합리적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이지만 실제 교육재정에서 인건비 등 학생 수와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거나 미래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실제 작동할 수 있게끔 반드시 보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범수 위원 알겠습니다.

송기창 총장님, 반대하지요?

○진술인 송기창 예, 반대입니다.

○서범수 위원 핵심은?

○진술인 송기창 내국세 연동 구조를 깨는 것이 미래의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제약을 줄 거고 그것이 교육정책의 개혁, 교육위의 개혁이나 교육정책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 상당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니다.

○서범수 위원 전은영 집행위원장님, 반대하지요? 핵심.

○진술인 전은영 두 가지입니다. 국제 해외 사례를 조금 보고 싶은데요.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원고에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같은 경우에 미국, 스웨덴, 핀란드 같은 경우 교육재정을 축소했다가 실패하고 다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일본의 경우에는 꾸준히 장기투자를, 일본도 한 번 실패를 했다가 학생 수 맞춰서 줄였다가 실패를 하고 다시 확대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굳이 우리가 실패한 사례를 다시 답습할 필요는 없다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우리 교육이 지금 전환의 시점에 있는 겁니다. 산업화 시대에 유효했던 교육을 미래에 전환해야 하고 그 교육을 지금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학생 수 포함해서? 그런데 그에 따른 사업과 재정이 있고 또 필요할 겁니다.

○서범수 위원 알겠습니다.

차관님, 들으셨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서범수 위원 어떤 분은 교육재정이 늘어난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줄어든다는 분도 있고 이게 같은 산식을 가지고 왜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 겁니까? 차관님은, 교육부 입장에서는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늘어난다고 하시네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양적으로 늘어납니다.

○서범수 위원 양적으로 늘어납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서범수 위원 진짜입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서범수 위원 교육부에서 양적으로 늘어납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렇게 추계하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추계하고 있습니까?

조용식 교육감님, 교육부차관님은 교육부 예산이 지방재정—제가 말씀드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건—늘어난다는 말씀이시고 조용식……

○울산광역시교육감 조용식 양적으로 1000억 늘어나는데 실제로 임금 인상……

○서범수 위원 지역에서의 현상을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울산광역시교육감 조용식 울산 지역에서 보면 임금 인상이라든가 그다음에 급식비 인상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실제적으로 마이너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얼마나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울산광역시교육감 조용식 지금 명목적으로 1000억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실제로 임금 인상분이 한 90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급식비 인상분이 한 100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로이거나 마이너스가 되는 형태로 갖춰져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하신 내려오는 돈이 한 7000억이 빠진다……

○울산광역시교육감 조용식 지금 현재대로의 산식으로 했을 때의 기준과, 지금 산식으로 했을 때는 울산이 전체 교부금의 2.51%를 가져왔거든요. 그 기준으로 했을 때와 바뀐 산식으로 했을 때의 차이가 7500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서범수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전의 산식에 비해서 지금 산식을 하면 7500억이 빠진다.

○울산광역시교육감 조용식 예. 당장 수치상의 금액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원래라면 좀 없었겠지만—그 금액에서는 줄어든고 늘어나는 것조차도 임금 인상이라든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부분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서울교육감님 동의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저요?

○서범수 위원 예. 조용식 교육감님 하신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전체 총액은 늘어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를 충분히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내려오는 돈이 많이 줄어들습니까? 그전 산식에 비해서 지금 산식을 하면……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많이 줄지요. 그것은 비교할 수가 없지요.

○서범수 위원 얼마나 됩니까?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2조 5000억 정도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률에 따르면 그 정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서범수 위원 교육부차관님, 이것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교육부에서는 재정이 는 대요, 안정적으로. 그런데 현장에 집행하는 교육감님들은 ‘아니다. 그전 산식에 비해서 7500억이나 적어지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2조 넘게 적어진다’. 여기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하나의 제도를 밀어붙이려면. 그런데 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어요, 지금.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이게 교육부에서 너무 밀어붙인다, 물론 교육부도 나름대로 디펜스를 하고 실드를 쳤겠지만 ‘기획예산처나 이런 데서 밀어붙이니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밀렸다고 나는 보는데요. 그러면 그와 관련한 각 시·도의 교육감님들하고 의논은 해야 될 거잖아요. 이게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따서 교육부가 쓰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청으로 가서 시·도에서 쓰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는 지역에 계시는 시·도교육감님들하고 한 번도 그런 기회를 안 갖고 이제 와서 하는 겁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차관님.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 금액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건 아니지요?

○서범수 위원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렇지요?

○서범수 위원 예, 저는 말씀이 왜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반영을 안 시키냐, 왜 교육부의 독단적인 생각 내지는 중앙부처에 있는 그 생각만 가지고 이런 제도, 엄청난 제도 변화입니다, 이것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앙…… 실제로 돈이 집행되는 데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맞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고 수렴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교육감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교육부에서 한 번도 그런 기회를 안 가졌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해야 한다는 그런 논의들은 십여 년 동안 굉장히 많이 있어 왔고요.

○서범수 위원 그래, 있었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런데 저희가 정부 내에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동안에 있었던 현장의 목소리들은 저희가 다 대부분은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고 정부 내 협의하는 이 과정에서 교육감님들에게 구체적으로 논의를 드리지 못한 것은 저희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최종 정부안이 확정되기 전에는 저희 장관님께서 교육감님들하고 말씀을 나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도 부족한 것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범수 위원 그러니까 틀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갑니다’ 정도 했지 지역에 있는 이야기를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제도를 바꾸려면 좀 더 현장의 의견도 수렴하고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자. 이게 벌써 십몇 년 동안 논의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불쑥 쑥 들어왔어요, 지금. 그런 어떤 공감대 형성부터 하고 가자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위원장 김희정** 서범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범계 위원** 일단 제가 이 교육위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성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청탁을 받았는데요. 기획예산처 국장님 나와 계세요?

○**기획예산처미래전략기획실장 강영규** 예.

○**박범계 위원** 일단 청탁 질의부터 먼저 합니다.

미래대응기금에 교육인재규정을 만들잖아요. 그 계정에 있는 기금을 가지고 초·중등교육에도 쓸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해야 된다는 매우 청탁이지만 반드시 받아들여야 될 요청을 제가 받았습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처미래전략기획실장 강영규** 정부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그 내용도 나왔고요.

○**박범계 위원** 짧게.

○**기획예산처미래전략기획실장 강영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현행 규정에, 국회에 제출한 규정이 지금 들어가게 된 겁니다.

○**박범계 위원**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기획예산처미래전략기획실장 강영규**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필요한, 그러니까 교육청 범위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박범계 위원** 예, 맞지요. 바로 지금 답에 교육청의 범위 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여기에 지금 사실은 모든 문제의 핵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교부금이 쓰여지는 것이 반드시 교육감님들이 집행하는 초·중등 예산으로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평생직업교육, 김문수 위원님이 잘 질의했듯이 고등교육에도 다 쓰여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학수 위원님, 제가 오늘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보면서 일반적으로 제가 배운 헌법 교과서 그리고 제가 법원에 있을 때 또 의정생활하고 또 법무부장관 하면서 제가 익혔던 여러 교육의 이념과 관련해서 도대체 ‘안정적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졌고.

두 번째, 교육자치라는 이념이 우리 헌법에 있는데 그런 가치와 이념만이 있는 것인가?

세 번째, 여기 우리 위원님 중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딱지를 부러워한다, 내지는 매표에 도움이 된다 이런 발언도 하셨습니다.

내년 예산이 821조에 가까운데요. 대통령은 행정수반입니다. 매해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의 결의를 통해서 익년도의 예산이 확정됩니다. 이게 다 매표와 관련돼 있습니까, 김학수 위원님? 짧게……

○진술인 김학수 매표라고 말하기는……

○박범계 위원 아니지요.

○진술인 김학수 쉽지 않지요.

○박범계 위원 왜냐하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대통령이 행정수반으로서의 권한과 책무를 다하는 겁니다.

남수경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견해를? 어려우면 넘어가시지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책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한이 있는 거고요. 모든 것에는, 모든 사업에는 다 돈이 들어갑니다. 그 돈 들어가는 것을 다 어떤 선거를 대비해서 매표를 하는 일환으로 본다면 한도 끝도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이 존립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명제에 도달되느냐? 교육자치라는 개념, 교육감님들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과 통찰적으로, 종합적으로, 보편적으로 교육감님들이 커버하지 못하는…… 정근식 교육감님이 커버하는 서울에서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을 반영받는 수혜자, 대상자들과 달리 전체 국가,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지역과 교육감의 차이와 관계없이 인재양성이라든지 또는 평생교육이라든지 또는 고등교육의 강화라든지 또는 전 세계적인 시대의 변화에 따른 그 이념에 맞게끔 AI·반도체 등등의 어떤 국가적인 정책, 시급한 정책에 조응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는 그것을 적립해 가지고 어떤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그러한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남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인 남수경 고등교육까지 평생직업교육까지 시대 변화에 맞게끔 함께 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위원 지금 현행 교육자치의 꽃은 교육감님들의 직접선거입니다. 맞지요? 그게 꽃입니다. 얼마 전에 저도 그렇게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정근식 교육감과 존경하는…… 대구교육감님, 미안합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강은희 강은희입니다.

○박범계 위원 강은희 교육감님.

또 울산교육감님은 제가 잘 알지요. 제가 정말 존경했던 노 교육감님과도 관련이 있으시잖아요.

세 분의 교육철학은 다릅니다. 지역의 여론도 다릅니다. 대통령은 그렇게 지역과 또는 교육철학이 다른 그런 지형 속에서, 지평 속에서 전체를 통합적으로 고찰하고 국가적이라는 이름, 전 국민적이라는 이름으로 긴급하게 대응하거나 또는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정근식 교육감님?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예, 당연히 동의합니다.

○박범계 위원 바로 그런 측면이 저는 미래대응기금의 성격이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님이 적절히 지적했듯이 이것이 단순히 교육감님들이 집행하는 초중등교육만 놓고 보더라도 앞으로 3년 내에 추가 세수가 거의 확정적으로 예정되는, 앞으로 3년 내에 특별하게 줄어드는 게 없습니다. 늘어납니다.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사회 변화가 급속

하지 않을 때, 과거 개념으로 따지면 수십 년간 내지는 10년간 지속되는 제도를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제도의 변화가 2년, 3년 단위로 더 줄어들고…… 아니, 1년 단위로 법률을 개정하고 제도를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조용하기 위해서 미래 대응기금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교육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또 학부모의 대표자로서 걱정하시는 여러분들의 생각에 좀 아쉬운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제일 처음에 질의드렸던 초·중등교육에도 미래대응기금을 쓸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만들면 보다 더 안정적인 장치가 되지 않겠나.

또 하나, 아까 물가와 임금상승률 얘기했습니다. 그건 과거의 산식에도 마찬가지로 대입되는 같은 얘기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이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남 위원님, 이 마지막 말에 대해서는 제 말씀이 맞지요? 그렇지요? 물가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임금상승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제도 개편이 결국 마이너스에 해당한다는 얘기는 그 물가상승률·임금상승률을 과거의 방식이더라도, 20.79의 방식이더라도 항상 고려되어야 되는 변수였지 그것이 돌출적인 새로운 변수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진술인 남수경 예, 그렇습니다.

교육계는 돈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주어진 돈을 쓰다 보니까 최악의 경우에 대한 장치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제도적으로 같이 갖춰져야 될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박범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아 위원 이번 교부금 개편이 학령인구 감소라는 구조적인 변화를 교육재정 배분에 반영을 하고 그래서 교육재정의 변동성을 줄이려는 취지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부가 제시한 장점에도 일부 타당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반세기 동안 우리 교육을 지탱해 온 교부금의 구조를 바꾸는 이 과정은 굉장히 신중하고 책임 있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특히 내국세 연동에서 정부가 제시한 새 산식,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만으로 교육재정을 정하는 이 방식은 얼마나 타당한지, 어떤 근거가 있는지 또 실제 교육 비용 구조와 부합하는지, 단순히 교부금이 몇 조원이 늘었냐 줄었냐가 아니라 5년 후, 10년 후 실제 미래에 이런 교육재정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는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나와 주신 전문가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부안에 대해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송기창 진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진술문에서 ‘내국세 연동 교부금이 전도 유망한 사업가의 소득이라면 개정안의 교부금은 빠듯한 봉급생활자의 소득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안정성이 높아지지만 교부금 증가폭이 완만해져서 교육개혁이나 어떤 새로운 투자 이런 개혁보다는 현상 유지에 급급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진술인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2018년도 이후에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 증가액이 인건비 증가액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여러 차례 이미 있었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앞으로도 교부금 자체는 늘지만 인건비는 더 많이 늘어서 학교 운영비나 시설비 등 실제 교육사업비가 압박받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진술인 송기창 예.

그런데 인건비가 더 많이 든다는 말은 사실이 아닐 수 있고요. 인건비 늘어나는 것보다 교부금이 덜 늘어날 때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인건비 증가분을 교부금 증가분이 충당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운영비와 시설비를 잠식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백승아 위원 이번 개편안이 교부금의 변동성을 낮추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래 교부금 규모는 명목GDP 또 학령인구, 최초 기준액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장래 인구추계는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030년대 후반 또 2040년대 초에 학령인구가 다시 증가하는 구간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진술인께서는 현재와 같은 교부금 연동제 폐지 대신에 이러한 인구 변화나 또 변동성에 대처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이 있으신가요?

○진술인 송기창 예, 내국세 교부금에 캡을 씌우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건비를 별도로 실수요를 교부하고, 옛날에 봉급교부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의무교육기관 교원만을 봉급교부금 대상으로 했는데 전 인건비에 대해서 보수교부금 형태로 운영하면서 나머지 부분만 내국세에 연동하든지, 아니면 현재와 같이 학령인구와 경상성장률에 연동하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승아 위원 교부금 개편 배경에는 교육청의 재정 운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교육재정 전문가로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송기창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교육청들이 자동적으로 예산이 배정되는 구조에 익숙해서 변화에 좀 둔감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고 또 현금성 복지나 이런 것도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비판을.

그런데 사실은 현금성 복지나 비효율적인 측면은 공공기관에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현미경을 들이대면 중앙정부도, 지방자치단체도 자유롭지는 못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교부금 구조 때문에 그것이 부각이 돼 가지고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백승아 위원 남수경 진술인께도 묻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현재 표준교육비연구 책임자이신데요. 학생수 감소가 곧 교육재정 수요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잖아요. AI·디지털 전환, 늘봄·돌봄, 노후시설, 특수교육 등등 학생

수와 무관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증가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인데요.

마찬가지로 장기인구추계의 불확실성까지 고려한다면 학령인구 변화율 중심의 이 산식을 딱 고정하기보다는 표준교육비 또 실제 교육비 이 비용을 기준으로 이 산식이 적정한지 평가하는 단계를 먼저 거치는 것이 어떤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남수경 표준교육비가 현재 5년에 한 번씩 마치 원가 계산하듯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5년 전에 이루어진 교육활동에 비추어서 물가인상률도 반영되지 않는 방식의 단가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미래 수요와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미래 관련된 특별교부나 이런 방식으로 띄워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처럼 표준교육비의 개념 자체를 기본운영비로 잡되 미래에 대한 것들을 대응해 나가는 방식을, 교육청들이 일정 부분은 기금을 운영하는 것을 마치 비효율이라든가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못 썼다라는 개념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육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당장의 수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획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승아 위원 제가 시간이 제한이 있어서……

이번 개편으로 종전 교부금으로 연결되던 이 재원의 일부가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진술인께서도 이 돈이 미래교육의 안정적인 재원이 아니라 기획예산처가 운용하는 어떤 잔여 재원처럼 운용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하셨는데요.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인재계정과 관련해서 국회 교육위원회의 심사권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아까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기획처가 예산 항목 하나하나 편성권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런 주장이 실효성이 있을 수 있을지, 혹시 대안이 있으신지 여쭙보고 싶고 또한 이 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진술인 남수경 미래대응기금에서 사실 초중등도 관련된 큰 사업들에 쓸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등교육 관련되어 있는 재원의 활용을 가장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고등교육은 일시적으로 끝나고 말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백승아 위원 그러니까 교육위원회의 심사권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법 이게 실효성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진술인 남수경 교육 관련되어 있는 다른, 특별회계에서도 그런 것처럼 관련돼 있는 상임위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백승아 위원 또 아까 말씀드린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남수경 한시성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백승아 위원 영구적으로 이번에 쪽 가야 된다 그렇게 보십니까?

○진술인 남수경 그걸 하면서 아마, 그 관련돼 있는 항목들의 쓰임새를 보면서 다른 법

률로 전환되더라도 그 금액이 보장될 수 있는 교육계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승아 위원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백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민정 위원 교육부차관님, 일단 우리가 이 새로운 산식을 하기 전에 내국세에서 20.79를 무조건 교부했던 때를 기준으로 여쭙볼게요.

20.7로 딱 떨어지면 이걸 각 교육청에 어떤 기준으로 분배합니까? 나름의 산식이 있나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산식을 시행령에 규정하게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건 학생수·학교수·학급수를 넣고 거기에 정부 시책으로 하는, 예를 들어서 기초학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를 넣어서 기준재정수요와 그 수요 산식을 만들어서 그 산식에 의해서 배분을 합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이번에 새로 하겠다고 하는 그 산식하고 하면, 지금 모든 교육감님들은 새로운 산식으로 하면 금액이 준다고 다들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교육감님들의 말씀은 미래대응기금으로 미리 교부 전에 떼는 그 걸 떼기 전하고 비교해서 줄어든다는 말씀이시고요. 지금은 내국세 20.79 전체가 아니라 기금을 먼저 떼고 그 안에서 20.79를 가지고 새로운 산식으로 하기 때문에 개편하기 전의 내년도 예산하고 비교해서 줄어든다는 말씀이십니다.

○고민정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처에서 뽑은 추계를 보면 올해가 75.7이고 그다음 78.9, 84.3, 90.1조로 이렇게 계속 늘어 가잖아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고민정 위원 그러면 인구수가 줄어드는 교육청 같은 데들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 수를 공급하기 하니까. 그것도 아닙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학생 수가 기본 산식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요, 이 배분할 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니까 계속 지금 모든 위원님의 공통된 건데 기획예산처에 의하면 전체 교부금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울산교육감님도 그렇고 정근식 교육감님도 그렇고 이 점 몇조가 준다고요?

그러면 서울시하고 울산, 대구 세 분이 나오셨고 제가 얼마 전에 충북교육감님도 예산이 줄어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하신 걸 봤거든요. 그 근거자료를 저희 여야 위원들에게 모두 다 제공해 주십시오. 그렇게 발표를 했을 때는 이미 근거가 있어서 이만큼의 예산이 그러므로 우리가 7500억이 준다 하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바가 있으니 준비시간이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빠른 시간 안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교육감님. 그러실 수 있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고민정 위원 그걸 좀 봐야지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대구광역시교육감 강은희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민정 위원** 아니요. 그냥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대구광역시교육감 강은희** 20.79로 했을 때……

○**고민정 위원** 강은희 교육감님,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묻지 않았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강은희** 예.

○**고민정 위원** 그리고 네 분의 진술인들에게 제가 묻겠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내국세 20.79%를 초중고에 집중적으로 했던 교부금을 이제 영유아부터 대학까지 죽 넓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예산이 갑자기 많아져서 혹은 학생 수가 줄어서 이것보다도 저는 대한민국의 교육 지형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방금 자료를 찾아봤는데 80년대에는 고등학교 진학률이 48.8%였고요 대학 진학률은 27.2%밖에 안 됐습니다. 유치원은 3~7%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현재 2026년 요 근방의 진학률을 봤더니 대학은 74.9%고요 3~5세 같은 경우는 95%까지 이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고등학교만 해도 50%가 안 되는 학생들이 갔던 때지만 지금은 대학과 유치원·어린이집까지 다 합쳐서 70~80% 이상의 학생들이 다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교부금을 초중고에게만 20.79%를 주게 되면 나머지 대학과 어린이집·유치원, 유치원은 지금 교육청이 하니까 유치원 뺀다 하더라도 어린이집하고 대학까지 포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문제의식 때문에 저는 이 문제 제기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네 분에게 여쭙게요. 이렇게 고등학교, 대학, 유치원의 진학률이 달라진 이 현상 상황 속에서 기존의 초중고에게 집중적으로 줬던 20.79%를 초중고에게만 주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한 분씩 답변 주십시오.

○**진술인 김학수**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정 위원** 남수경 진술인님.

○**진술인 남수경** 저도 고등교육·평생교육에 확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정 위원** 송기창 총장님.

○**진술인 송기창**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하지만 굳이 초중등에 가야 될 돈을 할애해서 다시 대학이나 평생교육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다고……

○**고민정 위원**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말하는 것이 줄어든다고 하시니 자료를 저희가 좀 보고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예산처에서 설명하는 건 줄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한테 낸 자료에도 보면 교부금이 매년 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준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니 숫자로 저희가 검증해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만약에 초중고 교육청에 가는 예산을 빼 가지고 대학에 준다 그러면 저도 반대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교육부하고 끊임없이 얘기했었던 것이 20.79를 전체는 다 지킨다. 대한민국의 교육의 20.79%는 아무도 못 건드린다. 다만 그 가운데 초중고는 산식에 의해서 예년에 비한 만큼은 보장해 주고 남은 금액, 이게 발생하는 이유가 초과세수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큼은 대학과 영유아 쪽으로 집중 투자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초중고의 예산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게 확인이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논쟁 펼치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전은영 집행위원장님,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진술인 전은영 어떤 걸 늘리……

○고민정 위원 대학과 영유아에.

○진술인 전은영 예, 당연히 대학도 어려운 걸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 영유아 관련해서는 이미 교육청 소속으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고민정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정근식 교육감님께서 유치원·어린이집이 유보통합이 되기 때문에 현재 유치원은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 향후에 어린이집도 교육청 예산으로 들어오게 될 건데 이 교부금 예산을 줄이면 어떡하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교육부차관님께 여쭙게요. 유보통합이 아직 정리가 다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예산은 영유특으로 지금 하고 계시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고민정 위원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아닙니다.

○고민정 위원 아니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고민정 위원 현재는 유치원을 교육청이 하고 계시고 나머지는 영유특으로 지금 하고 있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렇습니다.

○고민정 위원 대학은 어떻습니까? 아까 정근식 교육감님께서 곧 대학 같은 경우도 교육청이 전담하게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갈 거라고 하셨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고특으로 하고 계시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교부금과는 별도로 고특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별도로 하고 계시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고민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교부금이 영아부터 대학까지 다 커버해야 되는데 그 금액을 예산처가 다 줄인다 이게 아닌 겁니다. 지금 교육청의 예산은 초중고에 집중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대학이 비어 있고 어린이집이 비어 있는 상황이 현재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금법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좀 커버하겠다는 의미이거든요. 맞습니까, 차관님?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맞습니다.

○고민정 위원 제가 여쭙볼 게 너무너무 많은데 여기까지밖에 못 했는데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2시에 법안 상정할 때 교부금법이 올라왔는데 그 법안이 지금 이현승 의원님 하고 조은희 의원님 법안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한 번 강은희 교육감님은 국회의원 하셨

으니까, 그 법안이 2개 다 연동을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강은희 예, 알고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법안에는 연동이 폐지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다들 연동을 계속 지키라고 말씀하셔서 그것도 같이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좋겠네요.

○대구광역시교육감 강은희 그 의견에는 반대합니다.

○고민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정 고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고민정 위원님 질의 과정 중에 강은희 교육감님 답변하고 싶어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말씀 간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강은희 이게 너무 명확한 사실인데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20.79를 현행법으로 그대로 했을 경우에 감소가 얼마가 일어난다,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울산, 서울, 저희 대구 같으면 20.79로 산정했을 때 1조 5000억이 줄어든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지 그것을 다른 왜곡의 의도로 말씀드린 건 아니라는 걸 밝히고 싶습니다.

○고민정 위원 어쨌든 자료는 꼭 주십시오. 자료는 주세요.

○위원장 김희정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선 위원 늦은 시간까지 진술인 여러분 그리고 정부 측 그리고 교육감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죽 들어 보니까요 질문에 앞서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것은 시대 변화에 맞춰서 교육재정의 배분 방식을 손볼 수도 있다, 그건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전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그 전제는 반드시 아이들의 미래가 우선시 되어야 되고 그 아이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계의 의견이 필요하다. 그래서 반드시 교육계와 국회, 정부 간의 충분한 숙의과정이 선행되어야 되고 타협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이게 쟁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교부금 산식 방법에 미래대응기금을 할 때 한 가지의 문제점은 4일짜리 입법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한 달도 안 지났는데 일사천리로 지금 추진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굉장히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사실이구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제가 늘 걱정하는 이재명 정부의 불통과 아집이 결국 너무 빨리 당기려고 하지 않느냐는 것에 제가 걱정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교육계 곳곳에서 정부 개편안의 문제점을 짚어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공청회를 아니할 수가 없어서 지금 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통, 아집 그런 부분들이 여기 교육계에는 통하지가 않도록 우리가 잘 점검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인들 중에서 발표를 해 주시는데 전은영 긴급행동 집행위원장님 말씀 중에서 제가 굉장히 와닿는 말씀이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됐다’, 그다음 ‘교육재정의 중앙

집권화는 교육자치의 훼손이다’, 그리고 ‘숫자 뒤에 있는 학교와 아이들을 제발 봐 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교육계의 목소리를 높여 주셨고요.

지금 사실 교육 현장의 370여 개의 단체가 이 개편안에 대해서 한목소리로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느껴야 되고 이걸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그냥 막 지나갔기 때문에 화가 나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저도 결산 질의할 때 질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기획예산처의 임영진 국장님 나와 계시지요? 한번 일어서 보시렵니까?

○기획예산처재정혁신정책관 임영진 예.

○이인선 위원 제가 그때 지금 입법예고도 짧고 너무 짧은 기간에 간다고 얘기하면서 재정운용전략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기획예산처재정혁신정책관 임영진 예, 맞습니다.

○이인선 위원 거기에 교육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분이 들어왔습니까?

○기획예산처재정혁신정책관 임영진 안 들어왔습니다.

○이인선 위원 안 들어왔지요?

○기획예산처재정혁신정책관 임영진 예.

○이인선 위원 교부세도 지금 문제가 되는데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분들이 들어왔습니까? 그때 못 들어왔지요?

○기획예산처재정혁신정책관 임영진 지자체에서는 별도로 추천받지 않았고요.

○이인선 위원 못 들어왔고.

그러면 270개의 단체가 있는 여기 지금 긴급행동 집행위원장, 이 조직 중의 누군가가 들어왔습니까?

○기획예산처재정혁신정책관 임영진 들어오신 분은 없습니다.

○이인선 위원 없지요?

됐습니다. 앉으시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시간표가 국회의 판단을 너무 재촉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고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국회는 더 엄정하게 검증하고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헌법 제31조 보면 교육제도와 교육재정의 기본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편 논의는 국회에서 시작해서 국회에서 숙의과정을 거치고 국회에서 법률로써 결정해야 되는 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너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월권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전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진술인 전은영 예, 그렇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PPT를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예산 문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저게 다 옳다고는 얘기하는데 제가 나름대로 진행된, PPT를 한번 보시면 이 숫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2026년 본예산이 71조인데 정부안에 보면 78조, 그래서 어쨌든 7.2조가 늘어나면서 10%가 증가를 한다. 그다음에 교육감협의회의에서는 76.4인데 78.9가 돼서 2.4조밖에 증가하지 않는다. 분명히 숫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지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10.1이라는 차이는 있습니다.

교육감협의회의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교육부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차이가 있는데 임영진 국장님이 대답하실 문제는 아닙니다만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국장님, 여기 보면 지금까지 반영해서 실질 증가액이 실제로는 2.4, 2조 4000억밖에 되지 않는데 증가율이 3.2%인데 10%로 지금 보여지게 된 거고요.

거기에 교부금 안에 보면 정부가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는데 세금 변동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일몰이지요. 일몰되지요, 담배소비세가요? 그게 1조 6000억이고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율이 30에서 15%로 내려가면 2700억 손실이 오고 교육세, 유류분, 금융·보험업 여기에서 초중등 재원으로 지금 매주 1조 8000억 정도를 대학기금으로 이전돼 있습니다. 계속 이전 가는 거지요? 국장님, 그렇나요?

○기획예산처재정혁신정책관 임영진 저한테 여쭙보시는……

○이인선 위원 예,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획예산처재정혁신정책관 임영진 예, 방금 말씀하신 내용 다 맞는 내용이고요.

○이인선 위원 맞지요?

○기획예산처재정혁신정책관 임영진 예. 1.8조 원은 보통교부금으로 하게 됩니다.

○이인선 위원 그렇지요. 고특 특별회계로 전출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고민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숫자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주장이 다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은옥 차관님 나오셨습니다만 지금 인건비가 대체적으로 개편안을 설계하면서 보면 공립 교직원의 인건비가 35조로 설정돼 있고 법정의무지출인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합 지원이 7조 2000억,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6조 8000, 실제로 인건비는 50조에 달한다, 약 49조다. 이거 맞습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맞습니다.

○이인선 위원 맞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이인선 위원 그래서 이런 거대한 고정경비가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줄일 수가 있냐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PPT 하나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보면 비용이 증가되면서 교육청 재정이 굉장히 명들고 있다는 게 이 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족한 것을 결국은 교육청에다가 청구서를 내는 모양으로 돼 있고요.

지금 질의시간은 끝났습니다마는 PPT가 다음 게 하나가 있어요, 다음 게. PPT 한번 보시지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재정부담이 겹겹이 쌓인다. 교육청에서 교육감들 주장입니다. 세입이 동결이 된다. 여기 보면 고특회계도 나가 버리고 없고 숨은 인건비가 있다. 숨은 인건비가 이런 공무원의 비용입니다. 이게 8000억, 14조가 있고 지자체 비용이 이쪽으로 전가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전가되는 비용, 신도시의 학교 신설 부담금이 온다, 기타 고정비가 증가된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2조 9000억의 강제 증발이 나온다는 거예요. 교육감들이 굉장히 염려하고 화가 나 있습니다. 저는 교육감님들 다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교육감협의회에서 온 것을 제가 보면서……

향후에 추가부담금이 유보통합에 약 6조가 나가야 되고 고교무상 추가 부담이 또 1조가 가야 되고, 교육청에서 말하는 재정부담 이 부분을 우리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적하신 게 맞고요. 그래서 교육청의 예산이 한 10여 년 전에 비해서는 거의 2배로 늘었는데도 여유재원이 없는 것은 그렇게 고정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사업이 교육청으로 간 것들, 그런 고정비용이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보면, 아까 김준혁 위원님께서서는 10조를 해서 미래대응 내지는 학교의 시설을 확 좋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미래대응기금 안에 보면요, 교육부가 편성한 거는 정말 너무나 작은, 교육부에서 예산편성한 사업은 미래인재성장자금 0.7조, 교사·아동 비율 개선 0.5, 지방국립대 전액장학금 0.2, 인턴학기제 0.5, 교육부에서 교육청을 위해서 교육청 자체에 미래대응기금이 배치된 것은 제가 보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미래대응기금 중에서 재정교육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라도……

지금 이게 막 간다면, 우리가 물론 교육위에서 이것을 바로잡겠지만 간다면 이게 자꾸 이렇게 문제만 불거질 게 아니고 미래 교육재정 그 안에 교육부가 교육청하고 해서 반드시 쓸 수 있는 부분들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그 부분을 교육감협의회 회장님하고 산식을 해서 저한테 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위원님, 내년 예산안에는 미래대응기금에서 초중등에 쓰는 돈을 지금 잡을 수가 없고, 왜냐하면 법 제정도 안 됐고 그래서 잡혀 있지 않고. 앞으로 대규모 사업으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현재 법률안에 의하면.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심각하다. 교육감님들이 현장에 안 있고 저렇게 다 올라오신 이유는 굉장히 심각한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이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국 위원** 부산 진구갑 정성국 위원입니다.

차관님, 유초중등 교육에 돈이 줄어드는 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미래대응기금에 교육·

인재계정을 만들었는데 교육부가 마련한 이 계정의 내년도 사업목록을 보니까 총금액은 약 5조 원 그리고 지출이 영유아, 지역청년 지원, AI 미래인재 양성이거든요.

문제는, 앞에서 제가 지금 행사가 있어서 다녀왔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 질의를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중복이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초중등 교육재정을 위한 교부금이 왕창 줄어든다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정작 미래대응기금에는 초중등 교육사업 항목이 없다는 것, 이것이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차관님, 왜 초중등 교육에 대한 항목이 이렇게 하나도 없다고 봐야 되는 이유가 뭐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일단 전체적인 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별도로 떼고 그다음에 미래대응기금에서 교육·인재계정을 만드니까 그동안 부족했던 대학이나 평생 이런 데 우선은 내년 예산 편성을 한 거고요.

교육·인재계정에 초중등을 국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투자할 수 있는 항목이 지금 현재 법안에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초중고’ 이렇게 표시가 안 돼 있고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기금을 운용하면서 필요성이 있으면 편성할 수 있습니다.

○**정성국 위원** 그게 굉장히 모호하고 믿음이 안 가잖아요.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하고 이렇게 딱 명문화돼 있는 거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교육감님들이 지금 이 개편에 관련해서 확실한 신임을 가지지 못하고 올라오셔서 가지고 계속 이렇게 나름 항의하시고 하는 이유를 좀 돌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부금 정산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법률개정안의 부칙 제2조에 교부금의 차액 정산에 관한 적용례가 나와 있는데 2025년 교부금 정산부터 새로운 개정 산식을 적용한다. 그렇지요? 이게 골자입니다.

이 내용 맞습니까, 차관님?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말씀하신 내용 맞습니다.

○**정성국 위원** 그런데 이게 가능한 거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법안 결정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전체 정산분 중에 일부는 이미 반영을 했고 한 930억 정도가 반영이 안 됐는데 그 부분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성국 위원** 2026년 정산은 내년에 하니까 부진정소급에 의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2025년 교부금은 이미 끝났잖아요. 끝난 상황이고 교육청도 집행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산을 개정안을 소급해서 다시 적용하겠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기는 하는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국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성국 위원** 예?

○**교육부차관 최은옥** 국회에서 논의하실……

○**정성국 위원**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정성국 위원 국회에서 논의하기 전에 정부에서 더 정확하게 가이드를 잡으셔야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현재 정산된 분 이외에 남은 분은 이제 안한다라는 걸로 했는데 국회에서 더 논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성국 위원 기획예산처 실장님 계시지요?

○기획예산처미래전략기획실장 강영규 예.

○정성국 위원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정산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까지 정산해 가지고 소급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처미래전략기획실장 강영규 일단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바뀐기 때문에 확정된 수치가 나와서 그 내국세 얼마 들어왔는지로 조정하는 방식이니까 예전에는 정산이 필요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는 산식을 바뀐기 때문에 정산이 필요 없어진 거고, 그 안에서 정산에 대해서 금액이 약간의, 조금은 있지만 아시다시피 올해 추경을 했을 때 4.8조 증가했던 것까지는 다 추가를 해서 75.7조 원을 갖다가 산정을 한 거고요. 그렇게 산식이 바뀌었으면 이제 그 이후는 정산이 필요 없지 않나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성국 위원 차관님, 장관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말씀드리지만 지금 교육감님들과, 제가 대정부질문 할 때 총리님께 그 말씀 드렸거든요. 지금 이것을 교육감님들을 설득하려고만 하지 말고 교육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가지고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으시라고 했어요.

총리께서도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으셨고 나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십시오. 당장 지금 교육감님들하고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신뢰를 못 주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공청회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자료를 우리 보좌관들하고 좀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김학수 선임연구위원님, 하나 좀 여쭙볼게요.

교원 1인당 학생 수, 직원 1인당 학생 수의 중장기 목표를 설정해 산식에 반영하자 제안을 하셨는데 결국 이것은 교원 증원을 재정 산식에 연동을 시켜 가지고 감축으로 압박하는 그런 쪽으로 제도화하자는 걸로 받아들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인 김학수 중장기적으로 우리 현재 교원 수와 직원 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인건비 비중이 높다고 높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과거 내국세수 연동 방식으로 재원이 풍부할 때 교원들 많이 뽑고 공무원 많이 뽑고 직원 많이 뽑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생 수가 반토막 나고 반의 반토막 나는 그런 계획이니,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걱정한 교원 수와 직원 수를 만들고 그걸 시도 교육청들이 관리하고 이행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아까 제언을 드린 겁니다.

○정성국 위원 이게 저는 기계적으로는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생 수 감소 변화율이 학생이 줄어들기 때문에 교육재정이 그렇게 들어갈 필요가 줄어들

지 않냐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생각은 저는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진술인 김학수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성국 위원 예, 말씀하세요.

○진술인 김학수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학생 수 비중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p 줄 때 GDP 대비 일반 정부 유초중고 교육재정을 0.1%p 줄입니다.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줄입니다.

다만 늘리는 것은 학생 1명당 지원금액을 늘립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공교육의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정성국 위원 저도 충분히 어느 말씀을 하시는지 요점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정성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인데요. 추가질의 신청하실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세 분.

그러면 강경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은 3분 드리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김학수 연구원님 아까 뭐 답변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기회를 못 드렸어요. 지금 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의견을 내오셨고요. 되게 일관되게 그 논의가 한결같았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건비 상승 폭이 너무 높다 그거입니까? 그러니까 인력을 효율화하고 교육재정을 줄여야 한다. 요약하면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진술인 김학수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오늘 진술하신 내용에서도 아까 최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급증한 것이 예산 탄력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는데요. 그것도 맞습니까?

○진술인 김학수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위원님, 제가 몇 분의 성함을 지금 말씀드릴 건데요. 아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이영미 님, 민은주 님이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진술인 김학수 ……

○강경숙 위원 이분들이 학교급식실에서 일하시다가 폐암으로 사망하신 급식 노동자분들이에요. 각각 작년과 올해 공무상 순직을 인정받으셨는데요. 학교급식실은 산업재해 백화점이다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높은 산재 발생률의 원인이 열악한 인력 기준에 있다는 것이에요. 1명의 급식 노동자분들이 만들어야 할 식수, 학생 수가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김동욱 님이라고 들어 보셨어요, 김동욱? 과밀 특수학급에서 근무하다가 과로로 사망하신 특수교사 선생님이세요. 재해사망 공무원 그리고 순직, 두 가지를 다 어렵게

인정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특수교육 학생들 계속 늘고 있고요. 그런데 특수교사 수급 속도가 이걸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특수교사 1명이 담당해야 될 학생 수도 줄지가 않아요. 계속계속 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이초 학교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서이초 고 박인혜 선생님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사회의 교권침해 실태에 대해서 경종을 울린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김학수 연구원님, 이렇게 연구를 하시려고 하면, 재정전문가로서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연구를 하시려면 학교 현장에서 어떤 교육소요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장의 어려움이 뭔지 현장의 눈으로, 그 눈높이로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술인 김학수 답변……

○강경숙 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계속 아까 말씀을 드리는데도 전혀 거리낌이 없이 인건비가 너무 늘고 학생에 비해서 교사가 계속 늘었기 때문에 재정의 그런 어떤 탄력성, 예산 탄력성 이런 것이 준다고 계속 그러시는데 그 말씀이 일관되세요.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학교 현장은 그렇지 않아요. 그 행정업무 때문에 너무너무 버거워서 실제로 교육에 투여하지 못하는 시간만큼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되는데 그런 요구들도 많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진술인 김학수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 지금 정부의 산식, 새로……

○강경숙 위원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것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진술인 김학수 예, 말씀드릴게요.

정부의 새로운 산식 같은 그런 방식 말고 정말 필요한 예산을 매해 산정해서 어떤 교육 성과를 위해서 어떤 교육 사업으로 몇 명의 교사를 채용해서 할 것인지를 매해 국회와 시도의회에서 승인을 받으시라, 그게 안정적으로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교육감님들은 그것을 반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필요한 만큼, 급식실에 필요한 인력 만큼 뽑으시면 되는데 왜 그것을…… 제가 심지어 교육청에 직원 배치 기준과 공무원 배치 기준, 학급 설치 기준 이런 것들을 요청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 거절당했어요, 인사상의 비밀이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하고 인건비 상승폭 때문에 예산의 어떤 탄력성이 되게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그 말씀하고는 틀린 말 아닙니까.

○진술인 김학수 아니요, 그러니까……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말씀의 요지는 학교 현장에 너무나 많은 교원들이라든지 비정규직, 이런 공무원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돈이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늘어나고 있다 지금 그런 것이잖아요.

○진술인 김학수 서울에 있는 학교 한 가지 말씀드려 볼까요?

○강경숙 위원 교육감님들이 그것 주지 않는 것은 그냥 달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진술인 김학수 안 주십니다.

○강경숙 위원 그것하고 지금 늘어나는 예산의 폭이 인건비 때문에 늘어난다고 하는 거랑 뭐가 같습니까? 그 논리와 이것은 틀린 말이잖아요.

○진술인 김학수 아니지요. 선생님들이나 공무원이 늘어나는 그 연도가 예산이 넉넉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적정 수준의 직원과 교사 수준이 얼마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먼저 이루자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강경숙 위원 지난번에 고민정 간사님께서도 대정부질의할 때 교사 1인당 적정 학생 수를 조사해 봤더니 교사 수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교육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왜 연구원님들이 이런 질문 하셨을 때 그것에 대한 답변 주지 않으셨습니까?

○대구광역시교육감 강은희 그런 자료들은 늘 공개가 되어 있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할 때도 저희가 언제나 드리고, 매우 상세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정 강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승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백승아 위원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교육·인재계정의 용도에 서 ‘국가정책적으로 시급하거나 대규모 재정지원이 필요한 교육사업’이라고 규정된 항목 이 있습니다.

기획처 강영규 미래전략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정책으로 시급하거나 대규모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라면 초중등을 포함했다고 봐 도 무관하겠네요?

○기획예산처미래전략기획실장 강영규 그것은 명확히 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포함했다, 안 했다고 단언하기는 힘듭니다.

○백승아 위원 그러면 해석이 애매한 측면이 있어서 지금 법의 명확성이 부족한데, 그 러면 교육·인재계정 용도에 초중등 분야를 명확하게 포함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획예산처미래전략기획실장 강영규 일단 저희가 산정을 할 때……

○백승아 위원 짧게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기획예산처미래전략기획실장 강영규 예, 교육재정교부금은 작년에 발의했던……

○백승아 위원 ‘초중등 분야를 명확히 포함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시간이 짧아서요.

○기획예산처미래전략기획실장 강영규 정부안은 충분히 교육교부금을 줄 수 있는 수준 으로 산정식을 바꿨고요. 그 정도면 연평균 증가율이 상당히 높고 작년에 발표했던 국가 재정운용계획보다도 높기 때문에……

○백승아 위원 앓아 주세요, 지금 다른 답변을 하고 계셔서.

○기획예산처미래전략기획실장 강영규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하에서는 일반적으 로 필요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백승아 위원 답변 그만해 주세요. 마지막에 필요하면 더 하시고요.

실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아도 결국은 교육·인재계정에 대해서 이런 전반적인 컨트롤을 기획처가 하게 된다는 게 널리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게 예측하기가 어렵다, 장기 예측이 불확실하다 이런 점인데, 그러면 저는 초중등 교육에 대해서도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법안 심사는 우리 교육위가 아니라 재정위에서 하게 되겠지만 명시적으로 초중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그리고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 이것을 이유로 내국세 연동 구조를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율은 학생 수를 반영한 것이지 교육비용 감소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인건비와 물가, 특수교육, 돌봄, AI 디지털 전환 이런 실제 교육 수요를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물가와 인건비를 어떻게 반영할지, 또 실제 학생 수와 교육비용을 반영하고 이런 지표 보완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미래 교육 수요에 대한 별도 지원 장치 이런 것들 충분히 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은영 집행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교육계의 의견도 충분히 더욱더 경청해야 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추진해야 된다면 저는 장기추계가 불확실한 이러한 상황에서는 영구적인 제도개편으로 지금 딱 못 박을 것이 아니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처럼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좀 판단한 후에 국회가 이것을 연장할지 아니면 보완할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책임 있는 제도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정 백승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선 위원 어쨌든 교육재정교부금법이 있고 미래대응기금이…… 둘이 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부처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 교육위에서는 교육재정교부금에 손을 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오신 분 중에 남수경 회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보면 어쨌든 미래 수요에 대해서 중앙집권적 하향식 배분보다는 시도별 조례에 기반한 미래교육기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경로를 마련해 보자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맞습니까?

○진술인 남수경 예, 맞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적절한 제안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 어쨌든 하향식으로 왔기 때문에 교육기금을 시도별 조례에 따라서 했으면 참 좋았겠다 생각하면서, 어쨌든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쭙었고요.

오늘 시간이 없습니다만 지금 기획예산처에서도 나와 있는데, 물론 국장님이시지만 장관님한테 전달해 주셔야 되는 것은, 어쨌든 오늘 청문회에서 나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의 다양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토해 봐 주시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있기 전까지는 독단적인 추진을 멈추고 기다려 달라고, 자중해 달라는 것을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나와 계시지요?

차관님, 교육부에서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점들이 많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개편

안에 대해서…… 제가 대학 패키지 사업부터 모든 예산에서 늘 얘기한 것은 기획예산처가 너무 주도적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장관님과 여러 번 면담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는 교육부장관님 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간 굴욕적인 합의를 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고요.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꼼꼼하게 마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민정 간사님 또 교육위 위원님들, 지금 이런 제도가, 55년 만에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개편안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정부 단독으로 추진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바라지 않고…… 진짜, 아까 회장님들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바라지 않고 있는 정부의 일방적인 개편에 대해서는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모두 같은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려의 목소리를 가지고 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들, 오늘 하루종일 국회에 와 계시는데, 현장에 가서 하시고요.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보는데, 자료를 빨리 주셔야 됩니다. 고민정 간사님한테도 주시고, 자료를 빨리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정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교육감협의회에서 정근식 서울교육감님, 강은희 대구교육감님, 조용식 울산교육감님이 참석하셔서 질의에 답변이 있으셨고요. 아까 총 다섯 분의 교육감님이 방청을 하고 계셨고 지금 현재도 강삼영 강원교육감님하고 권순기 경남교육감님이 끝까지 자리에 앉아 계신 걸로 보여집니다.

앞서 세 분은 현장에 대해서 실제로 줄어든다라는 목소리,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간단하게, 강삼영 교육감님하고 권순기 교육감님, 짚막하게 각 시도교육청의 상황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강삼영 강원도교육감 강삼영입니다.

위원님들의 고견 잘 들었습니다.

사실 교육의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한 교실에 2명이 필요하다, 2명의 교사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교육 수요입니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올해와 같은 재정이 아니라 올해보다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 아이들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희정 수고하셨습니다.

○경상남도교육감 권순기 경남교육감 권순기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국가가 우리 교육에서 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굉장히 큰 책무 중의 하나는 지역 격차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학령인구를 그냥 그대로 가져간다 그러면 이 교육 격차는 더욱더 심화될 거고 지방 소멸은 가속화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산식의 문제는, 2026년도의 교육재정교부금을 가지고 하는데요. 이런

게 한다는 소리는 이런 가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2026년도의 교육시스템을 2030년도에도 그대로 가져가고 2035년도에도 그대로 가져간다 이런 소리입니다. 결국은 새로운 교육 수요나 미래 교육에 대한 교육 수요, 우리 교육현장에서 바뀌어야 될 이런 수요들에 대한 기여는, 새로운 수요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산정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정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네 분의 진술 과정 중에 구체적으로 법안의 조문을 적시하신 분도 있으셨고요. 산식에 대한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육부하고 기획예산처 양쪽으로 말씀 기회 드릴 테니 정부안으로 내신 것 중에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손봐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항목이 어떤 항목이 있는지 각각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부차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위원님들도 그렇고 발표자들께서 굉장히 좋은 안을 많이 말씀해주셨는데 그것들을 저희가 반영하기에는, 정부안을 너무 크게 흔드는 것은 저희가 반영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정부안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조금 더 장기지속성과 장기증가하는 것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반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희정 다음은 기획예산처 실장님 말씀하세요.

○기획예산처미래전략기획실장 강영규 정부 개편안의 취지는 세수가 갑자기 급증을 하기 때문에 당초에 교육교부금으로 드릴 금액보다 조금 더 드리면서도 안정적으로 증가하게—더 드리는 겁니다, 당초 계획보다—하는 안으로 마련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느는,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고등교육과 유아교육, 평생교육에 쓰겠다는 게 이 취지고요. 그 취지를 살려 주신다면 정부안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저희가 보기에 현재 상태에서 딱 어느 부분을 갖다가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아니, 공청회 하루종일 앉아 계시고 그런 답변을 하세요.

제가 기획예산처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공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교육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원하는 목소리를 위원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또 위원님들이 일방적으로 정부를 질타하는 자리가 아니라 균형 있게 얘기를 듣기 위해서 현안질의 형태가 아니라 공청회 형태로 마련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시는 분부터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과 반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진술인들을 모시고 질의를 들었고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게 교육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미래대응기금 등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에서도, 두 부처가 다 차관급이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교육위원회의 뜻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실장님 오셔서 부처의 대표로서 말씀을 하시고 해당 부처 장차관에게 뜻을 잘 전달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정부안은 바꿀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회의에 차관이 불참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하면 주무 부처가 교육부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잘 아는 실장이 참석을 하겠다, 양해를 부탁한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제가 ‘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잘 아는 분하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장관님은 오늘 행사가 있으시더라고요, 3시간 동안. 타당한 행사로 제가 검토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차관 참석을 요청했는데 3시간 동안에 다른 행사를 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행사명을 물었더니 행사명이 뭔지도 대답을 못 해요. 심지어는 행사 종료시간을 물었는데 행사 종료시간도 거짓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30분 동안에 개회식에 참여를 해서 기획예산처차관이 축하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시다. 그리고 당연히 토론 응답에는 기획예산처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자기가 3시간 동안 앉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회를 못 오겠다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이런 정부의 인식이 그동안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부안 발표하고, 입법예고 짧게 하고, 오늘 공청회를 듣고 나서도 정부안이 완벽하다는 식으로 답변하는 그런 부처의 태도, 어느 어젠다가 중요한지에 대한 정부의 그런 태도가 보여지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반 법 하나 바꾸는 게 아니라 반세기의 우리 대한민국 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중요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야 위원님들 할 것 없이 정부를 통해서 제기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 현장의 교육환경 개성에 돈이 필요한지 본회의 장에서도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장에서도 열심히 통계와 현장 조사해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못 하셨다 하더라도 기획예산처하고 교육부는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질의응답 그리고 진술인들의 의견 중에서 딱 잘라서 방향성까지는, 답까지는 말씀 못 하더라도 어떤어떤 항목 정도는 정부안 대비 수정의견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을 공식 문서로 교육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미래전략기획실장 강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거짓으로 회피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자고, 우리의 아이들이 행복해지자고, 학교 현장이 행복해지자고 이것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진술인들 말씀을 들어 보면 교육의 행정집행자도 그리고 학부모도, 선생님도, 누구 하나 지금 찬성한다는 교육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다 반대하는데, 그동안에 정당색이나 이념색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한목소리로 ‘이 안은 잘못됐다’라는 목소리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무턱대고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런이런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라든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든지, 논의가 필요하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청회로 통과의례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지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잘 들으세요, 정부 두 부처.

교부금 개편안에 학령인구 감소율의 35% 반영의 적정성 문제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습

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타당한 근거 제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교부금 개편안은 그동안 학부모나 교사단체 등 교육 현장과 소통이라든지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동안은 ‘정부안이 발표되기 전이라서 못 했다’라는 핑계를 대시는데, 그러면 그 발표된 안을 가지고라도 교육감을 비롯한 현장과 충분한 논의를 해서 정부 의견 다시 국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의 특히 교육·인재계정의 용도에 초·중등교육 분야를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있어서 국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생애 전주기 교육 및 평생교육 확충 필요에 대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개편안에 대한 교육청별 영향 추계 인식의 차이가 돈으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으로 자료 제출하셔서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수고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민정 위원 위원장님, 제가 끝나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볼 게 있는데요.

○위원장 김희정 그러세요.

○고민정 위원 일단은 기획예산처에서 차관님이 불참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강력한 유감을 나타낸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교부금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오히려 이런 자리에 나와서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시고 의도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될 분께서 보이지 않으신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교부금법은 교육위가 법안 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 기금법은 재정위에서 하게 돼 있지요? 맞습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고개를 끄덕임)

○고민정 위원 예, 그러면 기금법을 심사할 때는 교육부도 참여를 합니까?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까지 예산처 중심으로 세제개편안을 논의할 때 늘상 교육부는 빠집니다. 기획예산처 한 10명 들어가면 교육부 1명 들어갈까 말까입니다. 제가 간신히 부탁, 부탁해서 2명으로 늘리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지금 저희 교육위 안에서의 기류들은 눈으로 확인을 하셨을 테니까 ‘기금법이 재정위에 있으니 교육부는 그냥 대충 오늘 이 자리에서 공청회 한 것으로 넘어가고 기금법은 재정위에서 그냥 통과시키면 된다’ 이런 생각 하지도 마시고요.

실제로 그 법안이 심의가 되고 과정을 밟을 때는 저희 김희정 위원장님께도 매번 말씀을 드려 주시고 거기에 교육위 쪽에 의견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도 꼭 확보를 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처, 그렇게 챙겨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처미래전략기획실장 강영규 지금 말씀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재정위가 별도로 있으니까 재정위 쪽에다가도 의견은 전달을 하겠고요. 그리고 교육부하고 의논을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수고하셨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문제는 교육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결정도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함께했듯이 소통도 함께하고 책임도 함께 지고 국민들의 목소리도 함께 듣고 개편안도 과열음 없이 함께 내놓아야 합니다. 독자적으로 교육부가 결정하

지 못하게 해 놓고서 책임은 교육부가 지고 교육위원회에는 교육부만 설명하라고 반쪽짜리 만들 생각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게 진술하고 답변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 한분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관해 진술인들께서 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나왔던 여러 견해와 생각들이 정부 부처의 수정안을 만드는 데 그리고 저희 국회에서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다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정감사와 관련된 회의는 일단 아까 공지했듯이 9월 29일 날 하는데 시간은 오전 10시로 하겠습니다.

오늘 김문수 위원님과 고민정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 국회 관계자, 언론인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

○출석 위원(13인)

강경숙 고민정 김문수 김준혁 김희정 박범계 박정훈 백승아 서범수 이인영
이주영 정성국 한병도

○청가 위원(2인)

안규백 윤호중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 신문근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교육부
장관 최교진
차관 최은옥
기획조정실장 설세훈
고등평생정책실장 이해숙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 이윤희
학생지원국장 노진영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 심민철
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대변인 정병익
정책기획관 김홍순
국제교육기획관 이난영

대학정책관 송근현
대학지원관 이주희
평생교육지원관 예혜란
학교정책관 김영진
학교지원관 유지완
교원교육자치지원관 이강복
영유아지원관 김정연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차정인
상임위원 이광호
상임위원 김경희
사무처장 최수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정근식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강은희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조용식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강삼영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감 권순기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 강영규
재정혁신정책관 임영진

○출석 진술인

김학수(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수경(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학회장)
송기창(성산호대학원대학교 총장)
전은영(교육재정긴급행동집행위원회 위원장)